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업무에 수고가 많으시죠?

저는 동남 해상관광호텔(주)의 창설자이며 저희회사는 자본금19억원에 주식 19만주를 보유하고있는법인입니다.

1998년 회사가 IMF의 금융위기에 사업운영비를 마련코저 부산 소재 파라다이스저축은행으로부터 3회에 걸쳐 23억원을 대출시 본인과 처,처남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10만주를 채권양도 담보제공한 사실이 있습니다.

변제기일이 도래하여 일부금액은 본인의 집을 경매하여 지급하였고 잔여분의 금액은 변제를 못하고있든중 채권자 파라다이스 저축은행이 파산하여 채무자에게 통보도 없이 토마토 제2저축은행에게 채권이 양도되었으나 이또한 채권양수도 통보도 없다가 채권추심 업체인 하이대부 자산관리(유)에게 양도되어 2016년 3월21일경 저희 회사와 양수금 소송중에 그 당시 회사의 지분도없는 일명 바지 대표이사이든 김용석이란 자가 회사의 소송대리인으로 소송에 참여중에 대표이사의 책임과 의무를 저버리고 사익을 위하여 회사 정관의 양도제한 규정이 있음에도 회사에 통보와 이사회 승인도 없이 양도 담보채권을 개인이 **회사의 23억여원의 채권 (담보주식10만주포함) 전체를 현금 7천만원에** 양수 하였습니다. 그당시 대표이사인 김용석은 그 사실을 회사에는 숨기고 있다가 법인인감 및 법인카드를 분실한것처럼 신고하여 재발급하여 그 당시의 임원을 해임하고 제3자에게 사기행위를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현재도 범법행위를 일삼아 회사의 신용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있는데

의뢰인의 생각에는 하이대부 자산관리와 김용석간의 채권 양.수도 계약후 하이대부 자산관리사의 채권 양도 계약을 회사에 통보한 행위는 채권일체(담보주식포함)의 정산절차를 마친 것으로 판단이 되나 양수자인 김용석에게 채권자 변경만이 된것이므로 회사로 볼때는 채권은 이전된 것일뿐 채권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고 채권양도 담보채권은 아무나가질수도있다 주장할순 있으나 하이대부 자산관리사와 김용석간에 채권

양수도 계약당시 대표이사였으며 또한 채권 양수후 담보된 주식10만주의
소유자로 현재 최대주주라고 주장하는 김용석에게서 담보제공한 주주들이
1998년 대출당시 주주개인들이 회사를 위해 선의로 담보제공을 하였는바

김용석 전 대표이사가 그사실을 알았으면서도 채권양수도 계약후 하이대부
자산관리사가 회사로 채권 양도하고 양도통보 것은 채권의 정산절차를 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채권양수도계약당시 대표이사였든자가 선의의제공한 회사주식
담보제공자에게 담보주식을 반환하지 않는 행위는 일종의 배임 행위를
한것으로 판단이 되는바 담보 제공자인 배성일이 김용석이 채권양수한
총금액 7천만원을 공탁하고 담보주식의 근질권 말소 신청과 주식
반환청구의 소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선임해서 조치토록 할 예정인바
고견을바랍니다.

참고 : 판례문 2017 가합 8496 주주지위 확인

별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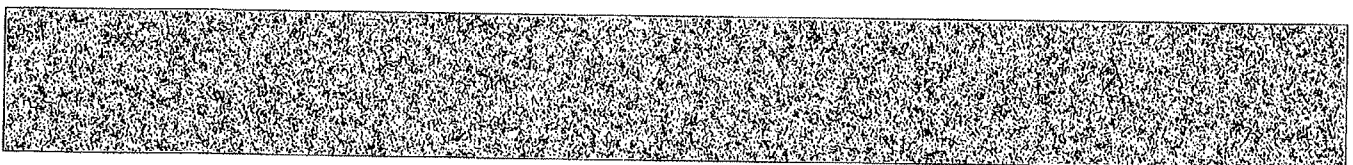
- @ 법인 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 @ 1998년 파라다이스 주식 양도담보 계약서
- @ 동남의 채권회수 내용의 내용증명일체
- @ 2003년 파라다이스 양수금 판결문
- @ 하이대부 양수금 판결문
- @ 2016.3.21. 김용석과 하이대부와와의 채권 양수도 계약서
- @ 하이대부자산(유) 채권양도 통지서
- @ 2021 고단 1992 김용석의 사기죄 판결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등기번호	067573	
등록번호	180111-0232495	
상 호	동남해상관광호텔 주식회사	변경 등기
	피어나인 주식회사 (Pier Nine Co., Ltd.)	2016.11.28 변경 2016.11.29 등기
상 호	동남해상관광호텔 주식회사	2017.08.08 부산 지방법원 동부지 원 2016가합1057 86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청구 의 소 2017.09.08 등기
본 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443자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436 카이저빌 204호	2020.07.11 변경 2020.07.17 등기
공고방법	부산시내에서 발행하는 일간 부산일보에 게재한다.	
1주의 금액	금 10,000 원	
발행할 주식의 총수	400,000 주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자본금의 액
발행주식의 총수	190,000 주	금 1,900,000,000 원
보통주식	190,000 주	
목 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상관광호텔업 1. 토산품 판매업 1. 투전기업 1. 레저스포츠업 1. 해상스포츠 대여업 1. 테니스업 1. 대중음식점업 1. 유흥음식점업 1. 주차장업 		

문서 하단의 바코드를 스캐너로 확인하거나,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의 발급확인 메뉴에서 발급확인번호를 입력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확인번호를 통한 확인은 발행일부터 3개월까지 5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발행번호 114158712750103012211012200327150716TOM101B1D0S8P1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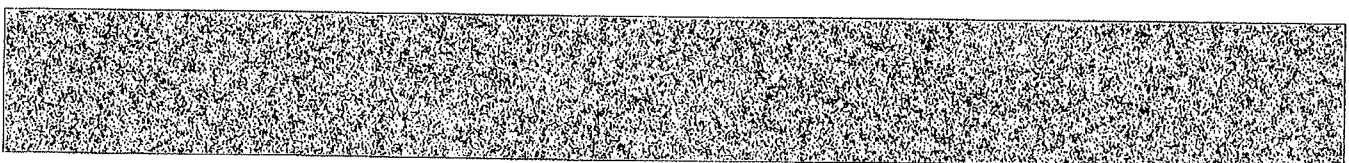
발급확인번호 5737-ASXB-JGWX

발행일: 2021/12/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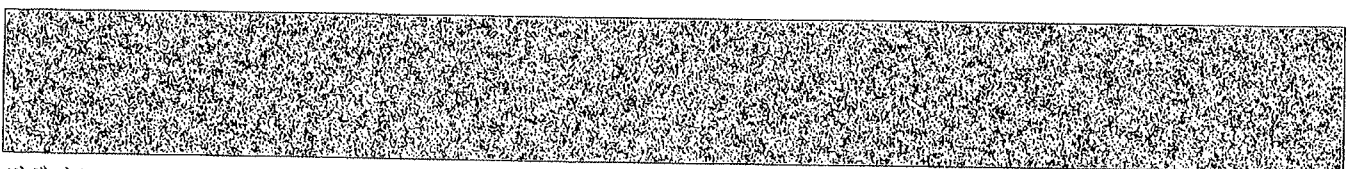
등기번호	067573
------	--------

1.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1. 석산개발업
 1. 광업
 1. 각항에 부대되는 일체의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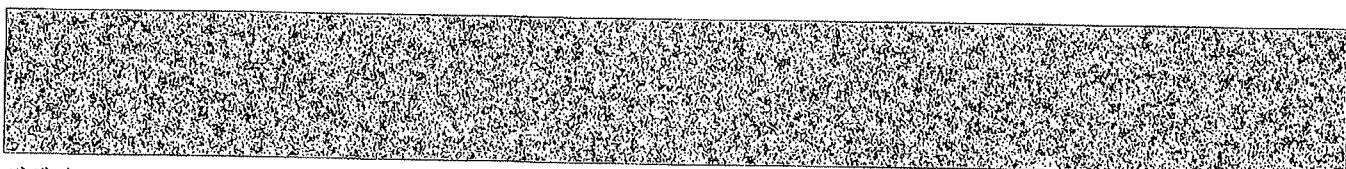
임원에 관한 사항			
이사 정석길 551210-*****	2007년 11월 26일 취임	2007년 11월 27일 등기	
사내이사 정석길 551210-*****	2010년 11월 26일 중입	2010년 11월 26일 등기	
	2013년 11월 26일 퇴임	2014년 01월 27일 등기	
이사 김대희 651011-*****	2007년 11월 26일 취임	2007년 11월 27일 등기	
	2010년 11월 26일 퇴임	2010년 11월 26일 등기	
이사 정병환 710210-*****	2007년 11월 26일 취임	2007년 11월 27일 등기	
	2010년 11월 26일 퇴임	2010년 11월 26일 등기	
감사 김대진 551210-*****	2007년 11월 26일 취임	2007년 11월 27일 등기	
	2010년 03월 31일 퇴임	2010년 11월 26일 등기	
대표이사 정석길 551210-*****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261-7 현대백서스아파트 201호		
	2007년 11월 26일 취임	2007년 11월 27일 등기	
	2010년 11월 26일 퇴임	2010년 11월 26일 등기	
사내이사 박재완 800627-*****	2009년 07월 01일 취임	2009년 07월 09일 등기	
	2012년 08월 03일 해임	2012년 08월 06일 등기	
사내이사 배광수 570615-*****	2009년 07월 01일 취임	2009년 07월 09일 등기	
	2010년 11월 26일 해임	2010년 11월 26일 등기	
대표이사 배성일 56062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443		
	2010년 11월 26일 취임	2010년 11월 26일 등기	
	2011년 04월 19일 사임	2011년 04월 21일 등기	
사내이사 배성일 560620-*****	2010년 11월 26일 취임	2010년 11월 26일 등기	
	2013년 11월 26일 퇴임	2014년 01월 27일 등기	
사내이사 주광태 640527-*****	2010년 11월 26일 취임	2010년 11월 26일 등기	
	2013년 11월 26일 퇴임	2014년 01월 27일 등기	
사내이사 김대진 620417-*****	2010년 11월 26일 취임	2010년 11월 26일 등기	
	2013년 11월 26일 퇴임	2014년 01월 27일 등기	
감사 김배진 6405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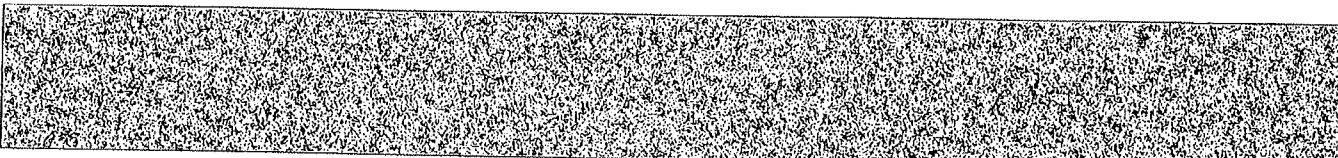
등기번호	067573	
	2010년 11월 26일 취임	2010년 11월 26일 등기
	2013년 03월 31일 퇴임	2014년 01월 27일 등기
사내이사 이호성 720201-*****		
	2011년 04월 19일 취임	2011년 04월 21일 등기
	2012년 08월 03일 해임	2012년 08월 06일 등기
대표이사 이호성 72020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암동 560-20 협성 피닉스타운 105-1002		
	2011년 04월 19일 취임	2011년 04월 21일 등기
	2011년 06월 27일 사임	2011년 06월 28일 등기
대표이사 배성일 56062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443		
	2011년 06월 27일 취임	2011년 06월 28일 등기
	2012년 07월 04일 사임	2012년 07월 05일 등기
대표이사 박광준 56070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백양관문로 10, 317동 1312호(당감동, 주공아파트)		
	2012년 07월 04일 취임	2012년 07월 05일 등기
	2014년 01월 27일 사임	2014년 01월 27일 등기
사내이사 박광준 560705-*****		
	2012년 07월 04일 취임	2012년 07월 05일 등기
	2014년 01월 27일 사임	2014년 01월 27일 등기
사내이사 여외식 661108-*****		
	2012년 07월 04일 취임	2012년 07월 05일 등기
	2015년 07월 04일 퇴임	2016년 11월 29일 등기
감사 김현경 770714-*****		
	2012년 07월 04일 취임	2012년 07월 05일 등기
	2015년 03월 31일 퇴임	2016년 11월 29일 등기
사내이사 주광대 640527-*****		
	2014년 01월 27일 취임	2014년 01월 27일 등기
	2016년 11월 28일 해임	2016년 11월 29일 등기
사내이사 김대진 620417-*****		
	2014년 01월 27일 취임	2014년 01월 27일 등기
	2016년 11월 28일 해임	2016년 11월 29일 등기
사내이사 김용석 610611-*****		
	2014년 01월 27일 취임	2014년 01월 27일 등기
	2017년 01월 27일 퇴임	2017년 02월 13일 등기
대표이사 김용석 610611-*****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대로 478(캐포동)		
	2014년 01월 27일 취임	2014년 01월 27일 등기
	2016년 11월 28일 사임	2016년 11월 29일 등기
사내이사 최용석 660314-*****		
	2016년 11월 28일 취임	2016년 11월 29일 등기
	2017년 01월 25일 사임	2017년 02월 13일 등기
사내이사 심원오 701003-*****		
	2016년 11월 28일 취임	2016년 11월 29일 등기
	2017년 01월 25일 사임	2017년 02월 13일 등기



등기번호	067573
사내이사 김중호 640902-*****	2016년 11월 28일 취임 2016년 11월 29일 등기 2017년 01월 25일 사임 2017년 02월 13일 등기
사내이사 이삼사 751015-*****	2016년 11월 28일 취임 2016년 11월 29일 등기 2017년 01월 31일 사임 2017년 02월 13일 등기
감사 유형관 580625-*****	2016년 11월 28일 취임 2016년 11월 29일 등기 2017년 01월 25일 사임 2017년 02월 13일 등기
공동대표이사 김중호 640902-*****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대봉로 20, 104동 1102호(매탄동, 아 편한세상아파트) 2016년 11월 28일 취임 2016년 11월 29일 등기 2017년 01월 25일 사임 2017년 02월 13일 등기
공동대표이사 이삼사 75101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달맞이길 41, 1302호(중동, 롯데캐슬바 차) 2016년 11월 28일 취임 2016년 11월 29일 등기 2017년 01월 31일 사임 2017년 02월 13일 등기
사내이사 유형관 580625-*****	2017년 01월 31일 취임 2017년 02월 13일 등기 2017년 10월 23일 직무집행정지 부산지방법원 2017카합100062 가처분 결정 2017 년 11월 20일 등기 2018년 04월 26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가합104636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판결 확정 2018년 10월 26일 등기
사내이사 임대화 760925-*****	2017년 01월 31일 취임 2017년 02월 13일 등기 2017년 10월 23일 직무집행정지 부산지방법원 2017카합100062 가처분 결정 2017 년 11월 20일 등기 2018년 04월 26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가합104636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판결 확정 2018년 10월 26일 등기
사내이사 박인표 630115-*****	2017년 01월 31일 취임 2017년 02월 13일 등기 2017년 10월 23일 직무집행정지 부산지방법원 2017카합100062 가처분 결정 2017 년 11월 20일 등기 2018년 04월 26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가합104636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판결 확정 2018년 10월 26일 등기
사내이사 김용석 610611-*****	2017년 01월 31일 취임 2017년 02월 13일 등기 2017년 10월 23일 직무집행정지 부산지방법원 2017카합100062 가처분 결정 2017 년 11월 20일 등기 2018년 04월 26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가합104636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판결 확정 2018년 10월 26일 등기
감사 최용석 660314-*****	



등기번호	067573
2017년 01월 31일 취임 2017년 02월 13일 등기 2017년 10월 23일 직무집행정지 부산지방법원 2017카합100062 가치분 결정 2017년 11월 20일 등기 2018년 04월 26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가합104636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판결 확정 2018년 10월 26일 등기	
대표이사 유형관 580625-*****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본로17길 42, 401호(목동, 목동빌) 2017년 01월 31일 취임 2017년 02월 13일 등기 2017년 10월 23일 직무집행정지 부산지방법원 2017카합100062 가치분 결정 2017년 11월 20일 등기 2018년 04월 26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가합104636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판결 확정 2018년 10월 26일 등기	
사내이사 주광태 640527-***** 2017년 08월 08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가합105786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청구의 소 2017년 09월 08일 등기 2017년 03월 31일 퇴임 2019년 09월 24일 등기	
사내이사 김대진 620417-***** 2017년 08월 08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가합105786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청구의 소 2017년 09월 08일 등기 2017년 03월 31일 퇴임 2019년 09월 24일 등기	
사내이사 유형관의 직무대행자 정재호 1959년 6월 7일생 2017년 11월 06일 부산지방법원 2017카합100062 가치분 결정으로 선임 2017년 11월 20일 등기 2018년 04월 26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가합104636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판결 확정 2018년 10월 26일 등기	
대표이사 유형관의 직무대행자 정재호 1959년 6월 7일생 부산광역시 연제구 범원로 18(가재동, 새중빌딩) 2017년 11월 06일 부산지방법원 2017카합100062 가치분 결정으로 선임 2017년 11월 20일 등기 2018년 04월 26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가합104636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판결 확정 2018년 10월 26일 등기	
일사사내이사 여의식 661108-***** 2019년 07월 23일 부산지방법원 2019비합2 일시대표이사 선임결정 2019년 08월 16일 등기 2019년 09월 20일 퇴임 2019년 10월 04일 등기	
대표이사 김대진 620417-*****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송로 23, 104동 1203호(다대동, 다대롯데캐슬블루아파트) 2019년 08월 30일 취임 2019년 09월 06일 등기 2019년 09월 20일 퇴임 2019년 09월 24일 등기	
사내이사 황용준 730905-***** 2019년 09월 20일 취임 2019년 09월 24일 등기	
사내이사 주광태 640527-***** 2019년 09월 20일 취임 2019년 09월 24일 등기	



등기번호	067573
2020년 12월 05일 사업	2020년 12월 07일 등기
사내이사 이재진 800625-*****	
2019년 08월 20일 취임	2019년 09월 24일 등기
감사 홍재표 640202-*****	
2019년 09월 20일 취임	2019년 09월 24일 등기
대표이사 황용준 730905-*****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로1066번길 61-5(장림동)	
2019년 09월 20일 취임	2019년 09월 24일 등기
사내이사 성미란 631107-*****	
2020년 10월 26일 취임	2020년 10월 26일 등기
사내이사 구범모 710912-*****	
2020년 10월 26일 취임	2020년 10월 26일 등기
사내이사 김홍근 590523-*****	
2020년 10월 26일 취임	2020년 10월 26일 등기
사내이사 김용석 610611-*****	
2020년 10월 27일 취임	2020년 11월 03일 등기
2020년 12월 05일 해임	2020년 12월 07일 등기
사내이사 남재근 570202-*****	
2020년 10월 27일 취임	2020년 11월 03일 등기
2020년 12월 05일 해임	2020년 12월 07일 등기
사내이사 조형진 760906-*****	
2020년 10월 27일 취임	2020년 11월 03일 등기
2020년 12월 05일 해임	2020년 12월 07일 등기
사내이사 최광영 620215-*****	
2020년 10월 27일 취임	2020년 11월 03일 등기
2020년 12월 05일 해임	2020년 12월 07일 등기
사내이사 김대진 620417-*****	
2020년 12월 05일 취임	2020년 12월 07일 등기

기 타 사 항

1. 명의개서대리인

1. 명의개서대리인의 상호 및 본점소재지
 증권예탁결제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6

지점에 관한 사항

1. 서울 강남구 역삼동 548-25 흥용빌딩 14층(서울지점)

회사성립연월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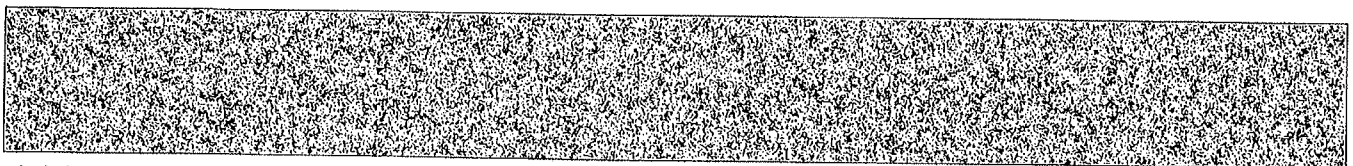
1997년 05월 23일

등기기록의 개설 사유 및 연월일

2009년 06월 16일 강원도 삼척시 교동 761-14(으)로부터 본점이전

2009년 06월 22일 등기

-- 이 하 여 백 --



등기번호	067573
------	--------

관할등기소 부산지방법원 등기국 / 발행등기소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과
 수수료 1,000원 영수함

이 증명서는 등기기록의 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다만, 신청이 없는 지점·지배인에 관한 사항의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서기 2021년 12월 13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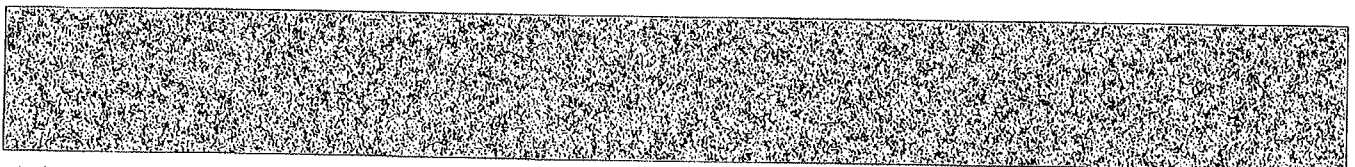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사항을 표시함.

전산운영책임관



문서 하단의 바코드를 스캐너로 확인하거나,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의 발급확인 메뉴에서 발급확인번호를 입력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확인번호를 통한 확인은 발행일부터 3개월까지 5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발행번호 114158712750103012211012200327150716TOM101B1DOS8P1 1

발급확인번호 5737-ASXB-JGWX

발행일:2021/12/13

* 주식양도대필시 증빙서류 기재하시말았음 *

주식양도담보계약서



주식양도담보제공자 "갑" : 배 성 일 의 2 인
채 무 자 "을" : 등남해상공관호텔 주식회사
양 수 인 "병" : 주식회사 파라다이스상호신용금고

주식양도담보계약서

주식양도담보 제공자

주 소

"별지에 기재함"

성 명

채무자 : 동남해상관광호텔 주식회사 대표이사 배 성 일

양수인(채권자) : 주식회사 파라다이스상호신용금고
대표이사 천 명 환

주식양도담보 제공자를 "갑"이라 하고, 채무자 동남해상관광호텔 주식회사를 "을"이라 하며 양수인 채권자 주식회사 파라다이스상호신용금고를 "병"이라 하여 "갑", "을"과 "병"의 양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주식양도담보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 "을"은 "병"에 대하여 관리계약서에 의해 발생하는 현재 또는 장래의 부담할 일체의 채무에 대한 담보를 위하여 "갑"소유 주식을 담보제공 하기로 하고 "병"은 이를 승낙하고 "갑"의 주식을 정히 인수하였다.

제 2 조 : "갑"이 양도담보 제공하는 주식의 표시

회사의 상호 : 동남해상관광호텔 주식회사

1 주의 금액 : 금일만원정

양도할 주식의 수 : 총 일십만주(액면금액 : 총일십억원정)

제 3 조 : "을"의 "병"에 대한 채무는 당사자간의 개별 어음공정증서 및 금전소비대차거래 약정에 의한 채무와 "을"과 "병"사이에 별도 체결한 관리계약서상의 조건이 모두 소멸할때까지로 한다.

제 4 조 : 본 계약의 기간은 위 제3조의 조건이 모두 소멸할때까지로 한다.

제 5 조 : "갑"은 "병"에게 다음과 같이 주식양도담보 제공 절차를 이행키로 한다.

(1). 본 계약서 작성과 동시 "갑"은 즉시 보유주권 전부를 "병"에게 교부한다.

(2). 또한 주식양도에 필요한 제서류도 함께 작성하여 교부한다.

제 6 조 : "갑"과 "을"은 "병"에 대하여 위 제3조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거래은행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거나 파산, 회계개시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병"은 담보제공된 주식을 임의 처분 하더라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 7 조 : "갑"과 "을"은 "병"의 승인 없이는 임시주주총회 및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을 것이며 주주총회 개최시는 반드시 "병"이 임의하였을 때 개최하겠으며 이사 및 감사 선임시에는 "병"의 동의하에 하겠고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이사, 감사 선임시에도 "병"의 동의하에 선임 및 변경할 것을 확약하고, 이사회결의서와 임시 주주총회(주식양도담보 승인건)를 개최하여 "병"에게 제출키르 한다.

제 8 조 : "갑"과 "을"은 금일자로 주식을 "병"에게 전부 양도담보 하였으므로 "병"이 지정하는 제3자 및 "병"의 동의 없이 주주총회 결의 등 주권에 대한 권리행사를 일체하지 않을 것을 자인하고 "병"의 동의 없이 "갑"과 "을"은 임의로 이사, 감사, 재산처분등 총회를 개최하는 행위는 무효임을 "갑"과 "을"은 확인한다.

제 9 조 : "갑"은 "병"이 양도담보된 주식에 대한 처분권을 갖고 있음을 확약하고 이 계약 체결과 동시에 또는 곧바로 주식양도담보계약서에 첨부된 인감 및 명의개서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양도담보로 제공된 주식에 대해 "병"앞으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 10 조 : "갑"과 "을"이 위 조항중 어느 한 항이라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병"은 달리 통지나 최고가 없더라도 위 제2조의 주식을 "병"이 임의처분 하여도 "갑"은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수 없고 "병"이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대표이사 및 이사, 감사를 변경하여도 일체 이의가 없음을 "갑"과 "을"은 승인한 것으로 한다.

제 11 조 : "병"이 필요로 할 경우 언제든지 주식에 대한 가치처분등 법적조치를 하였을 때 "갑"과 "을"은 항고(소)권을 포기하고 이의를 일체 하지 아니한다.

제 12 조 : "갑"은 "병"의 승락없이 다른 제3자에게 주식을 양도, 증여, 담보제공을 일체 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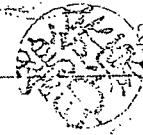
제 13 조 : "병"은 "을"과 "병"사이에 별도 체결한 관리계약서 및 본 계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동안에는 "갑"이 양도담보 제공한 주식을 재양도, 증여, 타질권제공, 임의처분 등을 하지 아니한다.

제 14 조 : "갑"과 "을"이 위 제3조의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였을 때에는 "병"은 즉시 "갑"이 담보제공한 주권을 반환함과 아울러 주식반환 절차를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의 사항을 어느 1항이라도 위약시에는 위약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기로 하고 위 2 조항의 취지에 따라서는 "병"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다.

- 붙임서류 : 1) 주주명단 1부.
2) "갑" 및 "을" 인감증명서 각 1부.

1998 년 11 월 일

위(갑): 주식양도담보제공자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날인	주식수
부산광역시 서구 암남동 299 - 4	배성일 <i>배성일</i>	560620 - 1011721		45,000
부산광역시 서구 암남동 459 - 1	서익술 <i>서익술</i>	560802 - 2114112		27,00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1477-4 그린아트빌라102호	서원학 <i>서원학</i>	620301 - 1114118		28,000

위 "을" : 채무자

동남해상관광호텔 주식회사
대표이사 배성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1동 1434 선플라자 오피스텔 729호

위 "병" : 채권자

주식회사 파라다이스상호신용금고
대표이사 천명환
위치배인
부산광역시 등구 범일동 830 - 55번지



주식양도담보계약서

주식양도담보 제공자

주 소 "별지에 기재함"
성 명

채무자 : 동남해상관광호텔 주식회사 대표이사 배 정 일

양수인(채권자) : 주식회사 파라다이스상호신용금고
대표이사 김 병 환

주식양도담보 제공자를 "갑"이라 하고, 채무자 동남해상관광호텔 주식회사를 "을"이라 하며 양수인 채권자 주식회사 파라다이스상호신용금고를 "병"이라 하여 "갑", "을"과 "병"의 양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주식양도담보 계약을 체결한다.

다 음

- 제 1 조 : "을"은 "병"에 대하여 관리계약서에 의해 발생하는 현재 또는 장래의 부당할 일체의 채무에 대한 담보를 위하여 "갑"소유 주식을 담보제공 하기로 하고 "병"은 이를 승낙하고 "갑"의 주식을 정히 인수하였다.
- 제 2 조 : "갑"이 양도담보 제공하는 주식의 표시
회사의 상호 : 동남해상관광호텔 주식회사
1주의 금액 : 한일만원정
양도할 주식의 수 : 총 일십만주(액면금액 : 총일십만원정)
- 제 3 조 : "을"의 "병"에 대한 채무는 당사자간의 개별 어음공정증서 및 금전소비대차거래 약정에 의한 채무와 "을"과 "병"사이에 별도 체결한 관리계약서상의 조건이 모두 소멸할때까지로 한다.
- 제 4 조 : 본 계약의 기간은 위 제3조의 조건이 모두 소멸할때까지로 한다.
- 제 5 조 : "갑"은 "병"에게 다음과 같이 주식양도담보 제공 절차를 이행하기로 한다.
(1). 본 계약서 작성과 동시 "갑"은 즉시 보유주권 권부를 "병"에게 교부한다.
(2). 또한 주식양도에 필요한 제서류도 함께 작성하여 교부한다.

제 6 조 : "갑"과 "을"은 "병"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없거나 자재은행으로부터 거래계좌 차분금(잔액)이나 과산, 회계계좌의 잔액이 있을 때에는 "병"은 담보제공된 주식을 임의 처분 하더라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 7 조 : "갑"과 "을"은 "병"의 승인 없이는 임시주주총회(臨時株主總會)를 개회하지 않을 것이며 주주총회 개회시는 반드시 "병"이 임의하였을 때 개회하였으며 이사 및 감사 선임시에는 "병"의 동의하에 하였고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이사, 감사 선임시에도 "병"의 동의하에 선임 및 변경할 것을 파악하고, 이사회결의서와 임시 주주총회(주식양도담보 승인건)를 개회하여 "병"에게 제출하기로 한다.

제 8 조 : "갑"과 "을"은 금일자로 주식을 "병"에게 전부 양도담보 하였으므로 "병"이 거절하는 제3자 및 "병"의 동의 없이 주주총회 결의 등 주권에 대한 권리행사를 일체하지 않을 것을 자인하고 "병"의 동의 없이 "갑"과 "을"은 임의로 이사, 감사, 재산처분등 총회를 개최하는 행위는 무효임을 "갑"과 "을"은 확인한다.

제 9 조 : "갑"은 "병"이 양도담보된 주식에 대한 처분권을 갖고 있음을 관할하고 이 계약 체결과 동시에 또는 곧바로 주식양도담보계약서에 첨부된 인감 및 영리개서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양도담보로 제공된 주식에 대해 "병" 앞으로 영의 개서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 10 조 : "갑"과 "을"이 위 조항중 어느 한 항이라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병"은 달리 통지나 최고가 없더라도 위 제2조의 주식을 "병"이 임의처분 하여도 "갑"은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수 없고 "병"이 주주총회를 개회하여 대표이사 및 이사, 감사를 변경하여도 일체 이의가 없음을 "갑"과 "을"은 승인한 것으로 한다.

제 11 조 : "병"이 필요로 할 경우 언제든지 주식에 대한 가치분등 법적조치를 하였을 때 "갑"과 "을"은 항고(소)권을 포기하고 이의를 일체 하지 아니한다.

제 12 조 : "갑"은 "병"의 승락없이 다른 제3자에게 주식을 양도, 증여, 담보제공을 일체 할 수 없다.




제 13 조 : "병"은 "을"과 "병"사이에 별도 체결한 관리계약서 및 본 계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동안에는 "갑"이 양도담보 제공한 주식을 재양도, 증여, 리필권제공, 임의처분 등을 하지 아니한다.

제 14 조 : "갑"과 "을"이 위 제3조의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였을 때에는 "병"은 주식 "갑"의 담보제공한 주권을 반환함과 아울러 주식반환 절차를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위 사안은 본회 1부(갑)로 위임사건은 위임자는 본회(갑)의 권한을 행사하고 위
 조항의 해석에 대하여는 "병"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다.

- 붙임서류 : 1) 주주명단 1부,
 2) "갑" 및 "을" 인감증명서 자 1부.

1998년 11월 일

위(갑) 주식양도담보제공자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날인	주식수
부산광역시 서구 압남동 299-4	배 성 일	560620 - 1011721		45,000
부산광역시 서구 압남동 459-1	서 의 숙	560802 - 2114112		27,00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1477-4 그린아파트빌라102호	서 원 화	620301 - 1114118		28,000

위 "을" : 채무자

동남해상관광호텔 주식회사
 대표이사 배 성 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1동 1434 번골라자 오피스텔 729호

위 "병" : 채권자

주식회사 파라다이스상호신용금고
 대표이사 권 명 환
 위지배인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830 - 55번지

주주총회 : 5명 이의없음(주주총회 100,000주)
출석주주수 : 5명 이의주주수 : 100,000주

대표이사 배성일은 회사 정관규정에 따라 의장직에 부임하여 임명수령한 임명수령
당하는 주주가 출석하였으므로 본 총회가 적법한 성립 되었음을 알리고 개최를 선언한
후 다음 의안을 부의하고 심의를 구하다.

의 안: 주식양도담보계약 체결 승인 의 건.

당사는 자금사정상 자력으로 회사경영이 어려워 부족이 (주)파라다이스상호신용금고
에게 당사에 대한 임의 권리를 요청하였으며, 임의관리계약 체결을 위해 별첨 안과 같
이 주식양도담보계약을 체결 할 것을 승인 가결함.

의장은 이상으로 총회 특적인 의안 건부를 심의가결 하였으므로 폐회를 선언하다(회의
종료시간 : 12:00분)

본 회의의 결과요청과 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
주주수가 기명 날인하다.

동남대상권조필

1988. 11. 26

동남대상권조필(주) 대표이사 : 김
이 사 : 서
이 사 : 서
감 사 : 서



근질권설정계약서

(1998년 11월 일)

권자명 주식회사 파라다이스상호신용 금고
질권자 대표이사 권명환 (인)
소 부산광역시 중구 범일동 830 - 55

무자 동남해상관광호텔 주식회사
대표이사 배성일 (인)
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1동 1434 컨돌라자 오피스텔 729호

질권설정자 배성일
소 배성일

질권설정자 시의숙
소 시의숙

질권설정자 시원하
소 시원하

1 조 (근질권설정)

근질권 설정자(이하 "설정자"라 한다.)는 채권자 겸 근질권자(이하 "근질권자"라 한다.)의 상호신용 금고 여신거래기본약관 및 채무자가 근질권자에게 제출한 다음 제1호의 피담보채무에 관한 거래약정서의 각 조항을 승인하고 다음 내용에 따라 그 소유인 방미 특목기재 주식에 관해 근질권을 설정한다.

2) 피담보채무의 범위

채무자의 채무 및 채무자 관련인의 채무(명세불청)와 이후로 발생할 채무자의 채무 및 채무자 관련인의 신 채무에 대한 여신

3) 기 관

채무자와 근질권자 당사자간의 개별 이음공정증서 및 금전소비대차거래 약정에 의한 채무의 채무자와 근질권자 사이에 별도 체결한 관리계약서상의 조건이 모두 소멸할 때까지 유효하다.

4) 근질권의 효력의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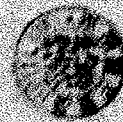
본 계약은 근질권의 효력이 그 목적인 주식에 개서, 병합, 분합, 증액, 감액된 경우에는 위 목적에 합치하여 변경하기로 한다.

주주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식수	액면총액	지분율
배성일	560620 - 1011721	45,000	450,000,000	45.00%
서의숙	560802 - 2114112	27,000	270,000,000	27.00%
서원학	620301 - 1114118	28,000	280,000,000	28.00%
합계		100,000	1,000,000,000	100.00%

동남해상관광호텔 주식회사의 주주명단이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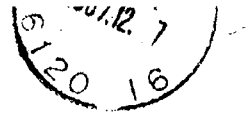
1998년 11월 일

위 확인자 동남해상관광호텔 주식회사
대표이사 배성일



주식회사 파라다이스상호신용금고 귀 중

3



내 용 증 명

발 신 인 : 배성일 (560620-1011721)

부산시 해운대구 우1동 1443지선 (010-9494-1252)

수 신 : 주식회사 파라다이스상호저축은행 대표이사 황 문 환

부산시 동구 범일동 830-55 (051-713-3000)

1. 귀행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2. 본인은 지난 1998년 11월 동남해상관광호텔(주)의 대표이사로서 귀행과 동남해상관광호텔(주)의 주식 10만주를 담보로 '주식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여 8억원을 대출받은 바 있고, 이 대출금 8억 중 본인이 소유중이던 부일전원빌라의 경매처분 등으로 약 4억원의 대출금을 변제한 사실이 있습니다.
3. 그러나, 양도담보중이던 10만주에 대해 귀행은 동남해상관광호텔(주)에 주주에 기재하여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고 동남해상관광호텔(주)에게 명의개서를 요청한 적도 전혀 없으므로 귀행은 동남해상관광호텔(주)의 주식 10만주를 단순양도담보 중이었다 할 것이고, 본인은 동남해상관광호텔(주)의 주식 10만주에 대해 매각동의를 한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귀행이 동남해상관광호텔(주)의 주식 10만주를 공매하기 위해 지난 2006년 5월 국제신문에 주식공매공고를 내고, '이길우'라는 사람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고, 또한 이 계약을 외상으로 체결한 것은 귀행이 공고 시 내걸었던 조건을 어긴 불법행위이며, 이 사실을 알면서도 귀행이 재공매공고를 내지도 않고 '이길우'라는 사람과의 외상주식매매계약을 2007년 5월 18일까지 유지한 것은 귀행이 과실이 분명하고 이는 분명 민,형사상의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을 귀행은 잘 알고 계시리라 사료됩니다.
4. 더욱이, 귀행은 본인이 2006년 11월 3항에서 언급한 불법계약을 주장하여 본인이 매수신청을 하자 귀행이 당시 '주식매매계약'이 만료되는 2007년 5월 18일 이후에 본인에게 매각하겠다'고 본인과 확실하게 약속을 하였으나, '이길우'와의 계약만료일인 2007년 5월 18일이 되자 귀행은 또 다시 '이길우'라는 사람과 불법임을 뻔히 알면서도 '주식매매계약'을 연장하여 주는 등의 행위로 계속 동남해상관광호텔(주)의 주식을 고의적이고 지속적으로 매수를 방해하였다고밖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게 됨을 귀행은 분명히 인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5. 위 4항에 걸쳐 귀행의 불법행위가 공개적으로 노출되어 책임을 면할 길이 없으나, 본인은 외상으로 이루어진 이 주식매매계약이 지난 2007년 9월 18일자로 '주식매매계약'내용과 관련하여 미납 등의 사유로 인해 계약내용 9조에 의거, 자동 계약해지 되었기에, 본인은 주식양도담보제공자 및 8억원의 원채무자로서 본인이 분명한 우선 매수권리자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는 바, 귀행이 이 같은 실수를 다시는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만일 동일한 실수가 반복될 시에는

발신인 : 배성일 (560620-1011721)

내 용 증 명

진퇴양난에 빠진 본인으로서 위 사실을 절대로 묵과하지 않을 것이고, 귀행의 과실에 대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진상을 밝히고 말 것이며, 이로 인해 추후 민형사상 문제가 야기되는 등으로 귀행은 뜻하지 않은 피해를 입게 될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6. 그러나, 귀행이 동남해상관광호텔(주)의 채권자임은 본인도 인정하는 바, 귀행이 채권변제를 받고 자하는 의향이 있다면 동남해상관광호텔(주)와 (주)토마토크루즈간 체결하였던 '사업권양도양수'계약 조건에 따라 당연히 채권변제를 받을 것임을 알려드리며 또한, 귀행이 양도담보중인 동남해상관광호텔(주)의 주식 10만주를 본인이 변제할 예정이오니 이 점 검토하시고 본인에게 빠른 연락을 바랍니다.
7. 마지막으로, 본인은 귀행과 '이길우'와의 '주식매매계약'이 지난 9월 18일로 계약이 자동해지되어 귀행이 '이길우'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였다고 알고 있으나, '이길우'라는 자는 아직도 동남해상관광호텔(주)의 주식 10만주를 소유한 주주라며 귀행과의 '주식매매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부산지역에 사해행위를 하고 다니는 바, 지역은행인 귀행이 이를 보고도 수수방관 하는 것은 동남해상관광호텔(주)의 채권자 약 70여명을 포함한 부산시민들의 불만과 엄청난 지탄을 받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귀행이 감당키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고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우편물은 2007-12-07
제 3609602004387호에 의하여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하였음을 증명함
부산우1동우체국장

120216

발신인 : 배성일 (560620-1011721)

질 의 서

(수신자) (주)파라다이스상호저축은행 대표이사 황 문 환

(발신자) 성 명 : 배 성 일 (560620-1011721)

주 소 : 부산 해운대구 중동 1275-3

솔레비치오피스텔 704호

이 우편물은 2007 07 25
제 36198402005160호에 의하여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하였음을 증명함
해수욕장우체국장

(제 목) 주식매매와 관련한 질의 및 매수 요청의 건

1. 귀 저축은행의 일익 변창함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 귀 저축은행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 질의 하오며 아울러 정식으로 요청할 사안이 있어 본 질의서를 송부합니다.
3. 다름 아니오라 귀 저축은행에서 1998년 11월 본인이 당시 대표이사로 있었던 동남해상관광호텔(주)에게 주식양도담보 계약서를 작성하고 8억원을 대출지원 하였던 바, 귀 저축은행에서는 주식양도담보계약서 “제 9조”와 관련하여 처분권을 가져간 것은 인정하나, 그에 따른 명의개서절차는 당시 “갑”과 “을”에게는 요청도 하지 않았고 더욱이 주권 또한 발행도 하지 않았음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4. 그러나 위 3의 절차를 생략하고 2006년 5월 18일 동남해상(주)의 이길우에게 외상매매 한 것은 상법 제336조 및 제337조를 위반한 심각한

한 과실로 판단되는 바 즉, 동남해상공관호텔(주)회사의 주주명부에 귀 저축은행이 등재를 하고, 관할 세무서에 주주명부 신고 등을 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뒤 매각하여야 공매란 표현이 적절한 절차이나, 귀 저축은행은 위 법조항 및 업무절차를 위반하고 진행한 점,

5. 위 4항의 내용에 덧붙여 귀 저축은행은 단순한 양도 담보불을 이전도 아닌 채 공매절차를 취하였다면 이 또한 명백한 불법임을 알려드리며,

6. 귀 저축은행에서 처음부터 잘못된 공매절차를 진행할 때 당시 본인 및 동남해상공관호텔(주)의 임원들의 주소 및 연락처가 분명히 있었고 연락도 가능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연락도 취하려 하지 않은 점, 더욱이 신문에 3회 이상 공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제신문에 그것도 토요일에 잠깐 공고한 뒤에 서둘러 매각을 하려한 점, 그리고 공매공고문상에 “보증금은 응찰 가격의 10%이상 및 잔금은 60일내에 일시불 조건임”의 원칙을 스스로 깨뜨림은 물론이고 이길우에게 외상으로 편법매매한 것은 불법임을 알려드리고 원칙적으로 본인이 선매수 하여야 할 사항임을 또한 알려 드립니다.

7. 귀 저축은행은 물론 주식의 불법매수를 한 이길우 또한 자신이 동사의 대표로 취임하고도 사업자등록은 물론 증권거래세납부 등의 세무절차는 물론 당연히 명의개서도 하지 않고 있는 사실, 그리고 만일 이점

에 대한 현재의 하자치유는 향후 더욱 큰 과실로 인한 결과를 초래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리며,

8. 이에 본인은 귀 저축은행의 계속될 오류를 사전에 바로잡고 아울러 (주)토마토 크루즈의 해상호텔 사업의 정당한 진행에 도움이 되고자 일금 4억원에 주식을 '우선 매수'하고자 정식 요청하오니 이길우 라는 사람 때문에 필요 이상의 계속되는 송사에 휘말리는 일이 없고 본인이 결말을 짓고자 하오니 위 각 항에 대한 귀 저축은행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2007년 7월 22일

위 질의서 작성인 배 성 일 (인)

6131106

동남해상관광호텔(주)

우 612-021 / 부산시 해운대구 우1동 1443번지선 / 전화 051)746-5648 / 팩스 051)746 - 6290

문서 번호 07 0809 01
 시행 일자 2007. 8. 9.
 경 유 부산 동구 범일동 830-55
 수 신 (주)파라다이스상호저축은행
 대표이사 황문환
 참 조 상무이사 강삼백
 담 당

선 결			지 시		
접 수	일자 시간 번호		결 재 · 공 람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동남해상관광호텔(주)의 업무협조의 건

1. 귀사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2. 당사의 現 대표이사인 본인은 지난 2006년 2월 6일 前 대표이사 배성일로부터 주식 20,000주를 매입하여 새로 등재한 주주입니다.

3. 당사의 前 대표이사 이길우는 대표이사 취임 이 후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재
 개신청도 하지 않고, 당사 본점 사무실의 임대료와 관리비가 약 일백만원가량이 체납되
 어 상수도마저 단절되는 등, 여러 가지로 자금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으며, 당사의 채
 권자 중 한명이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가처분처분금지'를 받은 시설물 '야외무대'를 임
 의대로 철거 및 매각하였으며, 이 매각대금을 자신의 사비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죄로
 민,형사상 고소를 당하는 등, 대표이사로서 주주를 비롯한 여러 사람에게 피해만 입히고
 있다고 판단되는 바,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본인 전석길(551210-1551015)이 지난
 2007년 8월 6일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이 우편물은 2007-08-10
 제 3610701005170호에 의하여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하였음을 증명함
 2007. 8. 10
 민락동우체국장

4. 다름이 아니오라, 2006년 5월 귀사와 이길우가 맺은 '주식매매계약'은 이길우가 1998년 11월 귀사와 당사의 前 대표이사 배성일의 2인이 당사의 주식 10만주를 가지고 '양도담보대출'을 받은 것을 알고 계획적으로 접근하여, 귀사가 양도담보 받은 당사의 주식 10만주를 매입하여 (주)토마토크루즈의 사업추진을 방해하며 채권협상을 하기 위함이었던 바, 이는 귀사에 계약금조차 납부치 않고 계약을 체결한 것과 계약체결 이 후 1년이 넘도록 매매대금 또한 납부치 아니하고 오로지 주권행사만 하고 있는 이길우의 행위로 뒷받침 될 것이며, 향간에 이길우가 (주)토마토크루즈에게 '주파라다이스상호저축은행과의 계약은 어차피 외상매매계약이었으니 매매대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약이 해지 될 것이고, 애초부터 동남해상관광호텔(주)에 대한 (주)파라다이스상호저축은행의 채권변제는 안중에도 없었으며, 단지 동남해상관광호텔(주)에 대한 나의 채권협상을 위한 계약이었다. 그리고, (주)파라다이스상호저축은행과의 계약기간을 9월까지 연장하였으나, 나의 말 한마디면 계속적으로 계약기간 연장을 해주겠다고 했으니, 빠른 사업진행을 원한다면 나의 채권금액을 25억으로 인정해주면 행정소송 및 인,허가에 관련된 해운대구청의 관련업무까지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라며 귀사를 이용하여 반 협박식의 말까지도 서슴없이 하고 있다고 하는 소문 등도 귀사는 간과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5. 그리고, 지난 1998년 11월 귀사의 대표이사 황문환과 당사의 前 대표이사 배성일이 맺은 '주식양도담보계약'에 의거하여 당사는 귀사에게 주식 10만주를 담보로 제공하고 일금 8억원을 대출지원 받았으나, 당사의 주식 10만주는 단순히 담보의 목적으로 귀사에 제공을 한 것이며, 또한 당사의 법인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당사의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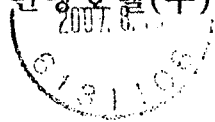
식에 대하여 주권발행을 한 적이 없고, 귀사와 당사가 맺은 '주식양도담보계약' 이 후 귀사는 당사에 단 한번도 명의개서를 요청한 적이 없으며, 이 절차가 생략된 상태에서 법으로 정하여 놓은 주식매각공고를 3일간 고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 1일간 주식매각공고를 하여 임의대로 이길우에게 매각한 것 등으로 귀사의 심각한 과실이 인정되며, 귀사가 공고하였던 내용 중 '유의사항 -...보증금은 응찰가격의 10%이상 현금으로 납부하여야함. 잔대금은 60일 이내 납부조건임...'의 공고된 내용을 무시하고 당사가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 하였던 주식 10만주에 대하여 前 대표이사 이길우와 '주식매매계약'을 외상으로 체결한 것은 명백한 권리남용이므로 불법행위가 확실하나, 본인은 당사의 대표이사로서 귀사의 대표이사과 당사의 前 대표이사 배성일이 맺은 '주식양도담보계약'에 대해서는 법인對법인의 계약임을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귀사와 이길우가 맺은 '주식매매계약' 체결에 대해 앞뒤 정황을 살펴 보건대 1. 전 대주주인 배성일에게 연락이 가능하였는데도 연락을 취하지 않아, 동남해상관광호텔(주)의 現주주인 정석길, 김대진, 김현정, 여외식에게 위 내용이 전혀 통보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동남해상관광호텔(주)에 큰 타격을 입힌 점, 2. 법으로 정해진 공고기일을 무시한 귀사의 행위와 3. 귀사의 공고 시 조건에 귀사와 이길우가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은 계약금조차 납부되지 않았으므로 부합되지 않으며, 4. 매매대금을 전혀 받지 않은 상태에서 금융기관인 귀사에서 계약기간 연장을 해준 점 등을 미루어 짐작컨대, 이는 분명 귀사와 이길우와의 커넥션이 있었것으로밖에 없는바, 그 숨겨진 의도를 당사의 대표로서 절대로 묵과할 수 없음을 명백히 밝혀드리며, 이로 인하여 추후 민, 형

사상 문제가 야기될 수 있고, 그에 따라 귀사가 뜻하지 않은 피해를 입을 수 있으며, 덧붙여 귀사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이길우는 귀사와의 불법적인 계약이외에도 사문서 위조 및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은 유채동산 '시설물'을 철거 및 매각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있었기에 이미 민,형사상으로 3건이나 고소가 되어 있는 상태임을 알려드립니다.

6. 마지막으로, 귀사는 담보중인 당사의 주식10만주를 불법매각하였으나, 당사의 대표이사인 본인은 귀사가 불법적으로 '주식매매계약'등을 체결하여 당사의 내란을 빚는 등 업무차질을 주었으며, 이는 재차 발생되어서는 안될 중요한 사항이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당사의 前대표이사 배성일 또는 現대표이사인 본인이 내방하여 채권을 변제하고 주식을 회수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 8월 9일

* 별첨 : 동남해상관광호텔(주) 등기부등본



동 남 해 상 관 광 호 텔 (주)
대 표 이 사 정 석 길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서기 *김민* 6. 24
서기 *김민* 1. 8

2005. 7. 01

원고에게 집행력 있는
정본 1통 부여함
부 산 지 방 법 원
법원조사 권혁 가

사 건 2003가단36429 대여금
원 고 주식회사 파라다이스상호저축은행
부산 동구 범일동 830-55
대표이사 김진태
지배인 최기영

피 고 1. 동남해상관광호텔 주식회사
부산 해운대구 우1동 1443 지선
대표이사 배성일

2. 배성일 (560620-1011721)

3. 서의숙 (560802-2114112)

피고 2, 3의 주소 부산 수영구 남천1동 45-37 부일전원빌라 나
동 101호

4. 서원학 (620301-1114118)
서울 동작구 대방동 501 대림아파트 112동 904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들
담당변호사 문종술

변 론 종 결 2004. 4. 9.

판 결 선 고 2004. 5. 7.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2,419,250,310원 및 그 중 금 1,471,985,630원에 대하여는 1998. 12. 3.부터, 금 663,616,081원에 대하여는 2000. 9. 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원고와 피고 동남해상관광호텔주식회사, 배성일, 서의숙 사이에서는 위 피고들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고(민사소송법 제150조), 원고와 피고 서원학 사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2002. 3. 2.자로 주식회사 파라다이스상호신용금고에서 원고로 명칭이 변경되었다)는 피고 배성일, 서의숙, 서원학의 연대보증 아래 피고 동남해상관광호텔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라 한다)에게, ① 1998. 4. 11. 금 674,000,000원을 변제기 2003. 4. 11., 이자 연 25%, 연체이자 연 30%, ② 1998. 12. 2. 금 800,000,000원을 변제기 1999. 12.



2., 이자 연 23%, 연체이자 연 30%, ③ 1998. 12. 2. 금 800,000,000원을 변제기 1999. 12. 2., 이자 연 23%, 연체이자 연 30%로 각 정하여 각 대출하였다.

나. 그 후 피고회사는 위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연체하여 2000. 6. 22.자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데, 그 때까지 피고회사가 지급한 금액을 소급하여 상계처리한 결과, 위 ①번 대출금에 대하여는 2000. 9. 6. 현재 잔원금 663,616,081원 및 연체이자 금 283,648,599원, 위 ②, ③번 대출금에 대하여는 1998. 12. 3. 현재 각 잔원금 735,992,815원의 각 대출원리금채무가 남아 있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2,419,250,310원 (663,616,081원 + 283,648,599원 + 735,992,815원 + 735,992,815원) 및 그 중 금 1,471,985,630원(735,992,815원 + 735,992,815원)에 대하여는 1998. 12. 3.부터, 금 663,616,081원에 대하여는 2000. 9. 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연체이율인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서원학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서원학은, (1) 먼저, 이 사건 대출 당시 피고회사의 임원의 자격으로서 보증 을 서게 되었던 것인데, 그 후 피고회사를 퇴직함으로써 이 사건 보증책임도 당연히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서원학이 이 사건 대출 당시 피고회 사의 이사로 재직하다가 1999. 11.경 피고회사를 퇴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연대보증 당시 그 대출금액과 기간이 특정된 이 사건 대출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보증책 임도 당연히 소멸된다고는 할 수 없고, (2) 다음으로, 위와 같이 피고회사를 퇴직할 당





시 원고측으로부터 이 사건 연대보증으로 인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은바 있을 뿐 아니라, 그 후로도 계속하여 원고측은 이 사건 연대보증으로 인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말해 왔으므로,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는 원고에 의하여 면제되었거나, 책임 없는 채무로 남아 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6호증의 기재 및 증인 정현철의 증언은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3) 마지막으로, 원고와 피고회사 사이의 1998. 11.경 체결된 주식양도담보계약내용에 의하면 원고의 동의나 승인이 없으면 피고회사는 임원변경이나 주식의 양도, 담보제공 등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회사는 2000. 7.경 지점을 개설하고 임원진을 전면 개편하였는바, 이는 모두 원고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이 분명하다 할 것인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로서는 피고 서원학에 대하여 피고회사로부터의 퇴직과 동시에 당연히 이 사건 연대보증으로 인한 책임도 면제된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용인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서원학의 주장처럼, 원고가 피고회사의 지점개설 및 임원진 전면 개편 등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 서원학의 이 사건 연대보증으로 인한 책임이 면제된다거나, 면제된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가 이를 용인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 서원학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문상배

문상배





정본입니다.

2017. 11.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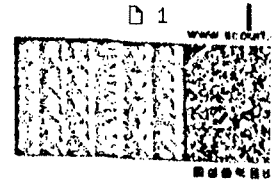
부산지방법원

법원주사보 김 중 수



※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번호조회 메뉴를
이용하거나, 담당재판부에 대한 문의를 통하여 이 문서 하단에 표시된
발급번호를 조회하시면, 문서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27 민사부

판 결

사 건 2014가합582828 양수금

원 고 하이대부자산관리 유한회사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708, 6층 (칭담동, 정화빌딩)
 대표자 이사 조부현
 지배인 강선아, 윤남노

피 고 1. 동남해상관광호텔 주식회사
 부산 해운대구 우동 1443지선
 대표이사 김용석

2. 배성일
 최후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마린시티1로 138 (우동)

변론종결 2015. 8. 21.

판결선고 2015. 10. 16.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문 최종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토마토2저축은행(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파라다이스 상호신용금고, 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은 피고 배성일의 연대보증 아래 피고 동남해상공관호텔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다음과 같이 3차례에 걸쳐 합계 2,135,601,711원 상당을 대출(이하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한다)하였다.

대출일시	대출원금	변제기	지연이자율
1998. 12. 2.	735,992,815원	1999. 12. 2.	17.50%
1998. 12. 2.	735,992,815원	-	17.50%
1998. 4. 11.	663,616,081원	-	19.00%

나. 피고 회사는 위 각 변제기까지 이 사건 각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2014. 6. 26.자를 기준으로 한 위 각 대출원리금은 합계 7,154,718,727원(= 원금 2,135,601,711원 + 이자 4,987,124,097원)이다.

다. 한편, 원고는 2011. 6. 28. 소외 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각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도받고, 그 무렵 소외 은행의 위임을 받아 피고 회사에게 위 채권양도통지를 마쳤다.

【인정근거】




- 피고 동남해상관광호텔 : 다름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피고 배성일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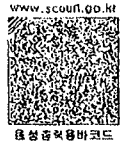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 사건 각 대출원리금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각 대출원리금 중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문 최종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사봉관	<u>사봉관</u> 
	판사	표현지	<u>표현지</u> 
	판사	전재현	<u>전재현</u> 



동남해상관광호텔(주) 채권 양수도 계약서

하이대부자산관리유한회사(이하"양도인"이라함)와 김용석(이하"양수인"이라함)은 양도인이 보유하고 있는 동남해상관광호텔(주)에 대한 보유채권 전체를 양수도 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 [양수도 목적물]

별지목록 채권의 모든원금, 이자, 지연손해금 및 기타 채권금액은 당해 채권에 관해 어음, 수표상의 권리, 보증인(연대보증인 및 물상보증인 포함)에 대한 권리, 양도담보 등 모든 담보권 및 기타 이에 수반되는 권리일체

제2조 [양수도 기준일]

양수도 기준일은 2016년 3월 21일로 한다.

제3조 [양수도 대금의 결정]

양수도 목적물에 대한 매매금액은 칠천만원(70,000,000원)으로 한다.

제4조 [계약금]

양수인은 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금으로 금 칠백만원(7,000,000원)을 양도인에게 지급하며 계약금은 양수도 대금의 일부로 충당한다.

제5조 [양수도 대금의 지급방법]

양수인은 제3조 대금잔금 육천삼백만원(63,000,000원)을 2016.04.20일까지 양도인에게 지급한다.

제6조 [양도인의 보증]

양도인은 양도의 목적물을 채권양수도 계약에 의거 채권을 양도함에 있어 현상태대로 양도 하고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7조 [양수인의 보증]

양수인은 잔금기한(2016.04.20)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계약금은 몰취되고 본건 양수도계약은 최고없이 자동으로 해제되며 이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것을 보증한다

제8조 [특약조건]

- 1) 양수인은 현재, 양도인이 진행중인 서울고등법원 2015나2067046사건에 대하여 잔금지급과 동시에 소송을 승계한다.
- 2) 양도인은 잔금지급기일경과후 위 서류중인 소송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않는다.

제9조 [관할법원]

양도인과 양수인의 거래에 있어 분쟁 발생시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 지방법원으로 한다.



별첨자료

- 1. 별첨(채권현황) 1부
- 2. 별첨(양도담보)
- 3. 양도인/양수인: 인감증명서 각1부

2016년 3월 21일

양수인 : 성 명 : 김 용 석
 주민등록번호 : 610611-100316910
 주 소 : 서울 강남구 양재대로 649

양도인 : 하이대부자산관리 유한회사
 대표자 이사 조 부 현

갑 제7호증

채권양도통지서



통지번호 : 토 2(차)T39-0101
 수 신 : 동남해상관광호텔 주식회사
 주 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443 지선
 발 신 :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708, 8층 (청담동,정화빌딩)

귀하의 번청하심을 기원합니다.

하이대부자산관리 유한회사 가 귀하에 대하여 기지는 채권 전부를 2016년 03월 21일자 채권매매 계약에 따라 최종적으로 김용석 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이를 통지합니다.

위 채권양도에 따라 당해 양도대상 채권의 모든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 및 기타 채권금액은 당해 채권에 관해 어음, 수표상의 권리, 보증인(연대보증인 및 물상보증인 포함)에 대한 권리, 근저당, 질권 등 모든 담보권 및 기타 이에 수반하는 권리 일체와 함께 2016년 03월 21일자 로 양수인인 김용석 에게 이전되었습니다.

- 아 래 -

▶ 양도채권명세(2016-03- 21 기준)

No 001

(단위:원)

대출번호	미상환원금	가지금금	연채이자	대출번호	미상환원금	가지금금	연채이자
01-39-0361099	735,992,815	별도	별도				
01-39-0365297	735,992,815	별도	별도				
01-39-0380120	663,616,081	별도	별도				

※ 상기 개재된 양도대상채권은 당사가 귀하에 대하여 2011년 08월 04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 기준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2016년 03월 21일 이후 상환한 금액이 있을 경우, 동 상환 이후 대출금 잔액은 상기 대출금잔액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6년 03월 22일

양도인: /통지인: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708, 8 층(청담동,정화빌딩)
 하이대부자산관리 유한회사
 대표자 이사 조 부 현



양수인 : 서울 강남구 양재대로 478 (개포동)
 김 용 석

위 채권양도인 하이대부자산관리 유한회사

이 무관문은 2016-05-27
 제. 8133502026103호에 의하여
 내장중영무관문로 발송하였음을 증명함
 서울중앙법원서리국장

담당자: 김진수 과장/ 연락처 : 02-467-6559

갑 제8호증



이 사건의 사건번호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카합100685 주주총회결의효력정지등 가처분

예정 기일 :

담당재판부 : 제3민사부 법원주사 공민희

직통 전화 : 결정:780-1411/ 이의 취소:780-1 팩 스 : 051-784-4534
413

e-mail : 재판부 이메일 주소는 문의사항을 연락하기 위한 연락처이므로 재판부 이메일 주소로 전자
문서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서면을 제출한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진행과 관련된 정보(송달과 확정내역 포함)는 대한민국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
'나의사건검색'란에서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등경매사건은 대한민국법원 경매정보홈페이지(<http://www.courtauction.go.kr>)
경매사전검색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반송처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112번길 20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4 8 0 5 3

수신처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3로 39,
204호(우동, 카이저빌)

황윤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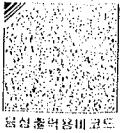
채무자1

동남해상관광호텔 주식회사 대표이사 황윤준

부1 607 04 20
부산재 해운대

2096826-786930
(민사신청과 제3민사부)
48118

2021-071-100685-827



주주총회결의효력정지등 가처분신청서

채 권 자 김용석
서울 송파구 위례순환로 477, 2303동 1104호(장지동, 위례포레샤인23단지)
채권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서평
서울 강남구 도곡로 194, 3층(도곡동, 일양빌딩)
담당변호사: 김상호, 신원진
(전화: 02-6271-4300 휴대전화: 010-1234-****
팩스: 02-6271-4329 이메일: ljs580116@daum.net)

채 무 자 동남해상관광호텔 주식회사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3로 39, 204호(우동, 카이저빌)
대표이사 황용준

목적물의 가액 : 금 100,000,000 원

피보전권리의 요지 :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확인 청구권

신 청 취 지

1.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채무자의 2007. 7. 12.자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채무자 정관 제21조 변경 결의 부분에 관한 효력을 정지한다.
 2. 채무자 대표이사는 제1항 기재 주주총회 결의 부분을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사 건 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

채 권 자 김용석

채 무 자 동남해상관광호텔 주식회사

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서

2021. 1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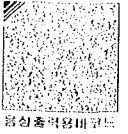
채권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서평

담당변호사 김상호, 신원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귀중

연락처 (02) 6204-5599 (변호사 김 상 호) shok78@naver.com
(02) 6204-5599 (변호사 신 원 진) swj3208@naver.com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서

채 권 자 김용석

서울 송파구 위례순환로 477, 2303동 1104호

채권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서평**

담당변호사 김상호, 신원진

서울 강남구 도곡로 194, 3층(도곡동, 일양빌딩)

전화 : 02-6204-5599, FAX : 02-6205-5599

채 무 자 동남해상관광호텔 주식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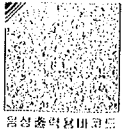
부산 해운대구 우동 마린시티3로 39, 204호(우동, 카이저빌)

대표이사 황용준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서

신 청 취 지

1.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채무자의 2007. 7. 12.자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채무자 정관 제21조 변경 결의 부분에 관한 효력을 정지한다.

2. 채무자 대표이사는 제1항 기재 주주총회 결의 부분을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1. 당사자 관계 및 본안 소송

가. 당사자 지위

채무자 회사는 1997. 5. 23. 해상관광호텔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채권자는 채무자 회사의 발행주식 총 수 19만 중 10만주를 보유한 주주입니다 (소갑 제1호증 등기사항일부증명서).

나. 본안 소송

후술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채무자 정관 제21조를 변경한



이 사건 총회결의는 주주 아닌 사람이 결의에 참여하였고,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 이상을 보유한 주주인 채권자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실제 주주총회 개최없이 의사록만 작성된 하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 바, 채권자는 본안 소송으로 이 사건 총회결의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외 소를 제기한 상황입니다(귀원 2021 가합1066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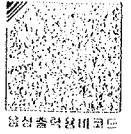
2. 사건의 경위

가. 채무자 회사의 현황

채무자 회사는 당초 부산 해운대구 우동 1443 지선 일대 공유수면(이른바 ‘마린시티 사업부지’)에 호텔용 선박을 설치하여 관광사업을 영위하였습니다. 그런데 2003. 9. 태풍 매미의 영향으로 호텔용 선박이 좌초되는 바람에 사업이 중단되었고, 이후 별다른 영업활동 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 채무자회사의 현재 지배구조

현재 채무자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발행주식총수는 19만 주이며, 채권자 김용석이 10만 주, 소외 여외식, 김현정이 각 45,000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소갑 제2호증 주주명부). 여외식은 소외 김대진의 처이고, 김현정은 김대진의 제수입니다. 실질적으로 여외식, 김현정의 주식은 김대진이 보유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김대진은 창업주 배성일과 친밀한 관계로 채무자 회사 설립 당시부터 이사로 등재되었고, 현재도 채무자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결국 현재 채무자 회사의 지배구조를 간략히 보면, 채권자 10만주, 김대진측 9만주로 대별됩니다.

다. 채권자의 주식 10만주 취득

1) 이 사건 회사 주식 100,000주의 양도담보 제공

이 사건 회사는 설립 즈음인 1998.경 소외 주식회사 토마토2상호저축은행¹⁾과 사이에 22억 7,400만 원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주주이던 배성일, 서익숙, 서원학(이하 '배성일 등'이라고 합니다)은 이 사건 회사의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함과 아울러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전부에 해당하는 100,000주(배성일 45,000주, 서익숙 27,000주, 서원학 28,000주)를 주식회사 토마토2상호저축은행에게 양도담보(근질권 설정)로 제공하였습니다(소갑 제3호증 주식양도담보계약서).

1) 변경 전 명칭 : 주식회사 파라다이스상호신용금고, 주식회사 파라다이스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양풍상호저축은행(이하,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토마토2상호저축은행으로 통칭합니다)



2) 주식회사 토마토2상호저축은행의 양도담보권 실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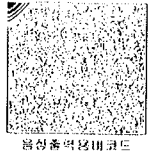
이 사건 회사와 배성일 등은 주식회사 토마토2상호저축은행에게 위 대출원금 중 2,135,601,71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주식회사 토마토2상호저축은행은 2011. 6. 28. 담보권을 실행하여 이 사건 회사와 배성일 등에 대한 채권 및 주식 100,000주를 모두 하이대부자산관리 유한회사에게 양도하였습니다.

3) 채권자의 주식 취득

이후 채권자는 2016. 3. 21. 하이대부자산관리 유한회사로부터 위 채권 및 주식 100,000주를 양수함과 동시에 위 주식에 대한 주권을 교부받았고, 양도인인 하이대부자산관리 유한회사는 다음날인 2016. 3. 22. 그 사실을 이 사건 회사에 통지하였습니다(소갑 제4호증 채권양수도 계약서, 소갑 제5호증 채권양도통지서).

4) 채권자의 임시총회소집 요구 및 법원의 허가결정

채권자는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취득한 후 이 사건 회사의 경영을 정상화시키기 위하여 김대진 측과 협의를 모색하였습니다. 하지만, 김대진 측에서는 오히려 채권자의 주주로서의 지위를 부정하고, 회사의 재산을 권한없이 처분하



려 하는 등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김대진측에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김대진측이 선임한 대표이사 황용준은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채권자는 법원에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를 신청하였고(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비합1012), 2020. 7. 15. 이를 인용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소갑 제6호증 결정문).

다. 여외식, 김현정의 주식 9만주 취득 경위

1)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는 2001. 4. 28.경 9만 주의 신주(이하 '이 사건 신주'라고 합니다)를 발행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보면 위 9만 주는 일응 배성일이 전부 배정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2) 위와 같은 신주발행행위는 기존 양도담보권자가 보유한 주식의 가치를 희석시키는 것입니다. 이에 양도담보계약서 제7조, 제8조는, 담보권자의 승인 없이는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못하며 주권에 대한 권리행사 일체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하 '이 사건 계약조항'이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 회사는 위 신주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양도담보권자에게 어떠한 통지나 동의도 얻지 않았습니다. 토마토2상호저축은행은 신주발행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뒤늦게 이 사건 회사의 증자 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알고서 2001. 11. 21.경 이 사건 회사에 신주 9만 주에 대하여 즉시 추가담보로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업무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소갑 제7호증 업무협조공문).

3) 배성일의 주식처분

배성일은 양도담보권자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2006. 1. 31. 여외식, 김현정에게 위 신주 9만 주를 각 45,000주씩 양도하였습니다(소갑 제 8호증 주식매매분할계약서).

이에 그치지 않고, 배성일은 2006. 2. 6. 다시 구주 45,000주를 김대진에게 25,000주, 정석길에게 20,000주로 각 매도하고는 명의개서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위 주식은 이미 양도담보에 제공된 것이었습니다. 토마토2상호저축은행이 이의를 제기하자, 김대진, 정석길, 여외식, 김현정은 토마토2상호저축은행을 상대로 위 구주 45,000주에 대한 주식소유권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08가합15332). 위 소송에서 양도담보권자로 주권을 점유하고 있는 토마토2상호저축은행이 주식의 소유자라는 이유로 원고패소판결이 선고되었고, 항소, 상고가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소갑 제9호증 판결문, 소갑 제 10호증 사건검색출력).

라. 2007. 7. 12.자 이 사건 주주총회

2007. 7. 12.자 이 사건 주주총회의 의사록에 의하면, 총 주주 6명 중 4명(참여주식 수 합계 135,000주)이 출석하여 참석 주주 전원의 동의로 채무자



회사의 정관 변경이 결의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소갑 제11호증 주주총회 의사록).

앞서 본 경위에 비추어 보면, 김대진(25,000주), 정석길(20,000주), 여외식(45,000주), 김현정(45,000주)가 참석하여 결의를 하였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의의 내용은 정관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원시정관과 비교해보면 제21조의 '주주총회결의 정족수'가 변경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원시정관 제21조와 변경된 정관 제21조를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소갑 제12호증 원시정관, 소갑 제13호증 변경된 정관 참조).

원시정관 제21조
<p>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한다.</p> <p>단, 정관변경의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와 발행주식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한다.</p>
변경된 정관 제21조
<p>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의 6할 이상의 수로 한다.</p> <p>단, 정관변경, 대표이사 변경의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의 6할 이상의 수로 한다.</p>



3. 피보전권리의 존재(주주총회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청구권)

가. 주주 아닌 사람이 결의에 참여하였습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주총회에는 김대진(25,000주), 정석길(20,000주), 여외식(45,000주), 김현정(45,000주)가 참여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김대진, 정석길이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주식은 위 부산지방법원 2008가합15332 판결의 판시와 같이 토마토2상호저축은행의 소유입니다. 따라서 김대진, 정석길은 적법한 주주가 아님에도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에 참여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였습니다.

나. 과반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주주총회가 개최될 당시 발행주식 총수 19만 주 중 토마토2상호저축은행이 10만주를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토마토2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소집통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판례는 전체 발행주식의 68%를 소유하고 있던 주주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결의 부존재사유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40952 판결).



다. 실제 주주총회가 개최되지 않고, 의사록만 작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길우는 2006. 5.경 토마토2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주식 10만주를 양수 받았다고 주장하며 채무자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기 시작하였습니다²⁾. 김대진 측은 이길우가 적법한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였고, 이후 이길우와 김대진측 사이에 극심한 경영권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분쟁의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채무자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위 이길우는 2006. 11. 3.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7. 7. 10. 해임된 후, 7. 19. 재취임, 8. 6. 해임, 8. 8. 재취임, 8. 13. 해임 등으로 각 등기가 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주주총회는 이러한 혼란이 거듭되는 가운데 이길우의 일시적 공백기간인 2007. 7. 12. 에 기습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정관변경결의가 있었던 2007. 7. 12.로부터 불과 2일 전까지 이길우가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당시 위 이길우와 김대진측은 경영권 분쟁으로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음이 명백한바, 그런 상태에서 이길우가 자신의 경영권 행사가 무력화되는 내용의 정관변경(보통결의의 요건이 발행주식 60% 이상)을 의욕하였을 리 만무합니다.

이러한 경위에 비추어, 애초에 위 정관변경에 관한 주주총회소집의 이사회 결의나 주주총회소집통지를 할만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2) 채권자가 파악하기로, 이길우는 토마토2상호저축은행과 사이에 채무자 회사 주식 10만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들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 주주총회를 적법한 소집결의나 소집통지가 존재하지 않았고, 갑 제1호증(인증서)는 주주총회가 개최되지 않았음에도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의관을 작출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라. 가사 주주총회 결의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정관변경 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배되어 무효입니다.

상법은 제368조 제1항에서 이른바 ‘보통결의’의 의결정족수를 규정하고, 한편으로 정관 개정의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2/3 이상, 발행주식총수의 1/3 이상이라는 특별결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상법 제434조). 특별결의의 경우 보통결의와 달리 의결정족수를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때문에 현행법 아래에서 상법상 특별결의 의결정족수를 정관에 의하여 가중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다만, 가중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에 의하더라도 다수결의 내재적 원리상 과반수 출석에 2/3 이상 찬성을 가중의 한계로 보고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합1167결정, 이철송 회사법강의 제24판 552쪽).

보통결의의 경우 ①일정한 한도까지만 요건을 가중할 수 있다는 견해³⁾, ②정관상 정하고 있는 특별결의 요건보다 가중할 수 없다는 견해⁴⁾, ③정관자치 원칙상 폐쇄회사와 같은 경우에는 총주주의 동의까지로 가중할 수 있다는 견

3) 전계 주석 상법 회사(III), 226면

4) 정찬형, 상법강의(상) 2013, 859면; 장덕조, 회사법 2015, 250면. 이철송 회사법강의 2013, 545면(특별결의를 가중할 수 있는 한도치인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 출석 및 그 3분의 2까지 가능하다고 봄)



해5)가 있습니다. 어떠한 견해에 따르더라도 결의요건을 무한정 가중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다수주주의 의결권을 침해하고, 극소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에게 지분을 초과하는 정도의 거부권을 부여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으므로 주식회사의 민주적인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선까지 가중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보통결의의 경우 정관으로 의결정족수를 가중한다 하더라도 특별결의의 의결정족수를 넘어설 수 없고, 특별결의는 가중 한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과반수 출석에 2/3 이상 찬성'이므로, 만일 특별결의의 한계를 초과하는 정도로 보통결의의 의결정족수를 가중한다면, 이는 주식회사의 기본 운영원리를 벗어나 상법 규정에 위반되는 처사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채무자 회사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었던 상황도 아니므로, 보통결의의 의결정족수를 무조건 발행주식 60% 이상으로 가중하는 것은 어떤 견해에 의하더라도 위법한 처사에 해당합니다.

결국,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로 변경된 정관의 내용은 보통결의와 특별결의를 구분하지 않고 무조건 발행주식 60% 이상의 의결정족수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정관으로 가중할 수 있는 의결정족수의 한계를 초과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이처럼 터무니 없는 내용의 정관변경이 의결된 것은 김대진측이 작은 지분으로 채무자 회사를 사유화하고, 여타 주주가 경영에 관여하는 것을 무력화시킬 의도를 가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5) 최기원, 전게서, 435면



4. 보전의 필요성

가. 이 사건 총회결의의 하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총회결의는 주주 아닌 사람이 결의에 참여하였고,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 이상을 보유한 주주인 채권자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실제 주주총회 개최없이 의사록만 작성된 하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이는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총회결의는 부존재하거나 무효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중대한 하자가 있는 이 사건 총회결의에 따라 이루어진 채무자 정관 제21조 변경 부분의 효력은 정지되어야 합니다.

나. 위법한 정관 조항의 집행 금지 필요성

이 사건 회사는 2000년대 초반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시설물을 설치하여 해상호텔사업을 영위하다가, 태풍 매미로 인하여 호텔로 사용중이던 선박이 전복됨에 따라 사업이 좌초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사건 시설은 향후 새로운 사업으로 활용될 수 있는 상당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과반주주로서 이 사건 시설을 다시 정비하여 향후 부산의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이 사건 회사의 지배구조 및 경영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합리적으로 모색되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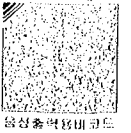
나 이 사건 결의로 위법하게 변경된 정관 조항에 의하여, 과반주주인 채권자의 경영참여가 구조적으로 봉쇄되고, 소수주주의 전횡이 보장되고 있습니다.

다. 김대진측 경영진은 회사의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고 있습니다.

김대진은 2010. 3. 6. 판결을 통해 주주가 아님을 명확히 인식하였음에도, 2011. 5. 12. 채무자 회사 주주총회에 자신이 마치 동 회사 주식 25,000주를 보유한 주주인 양 참석하여 이 사건 회사의 시설을 자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주주총회 결의를 하였습니다. 이어 2012. 8. 7. 채무자 회사의 접안시설 등을 유삼주 외4인에게 금 32억 원에 양도하였으며, 2014. 10. 23. 위 시설을 (주)피오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공작물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을 편취하기 까지 하는 등 이 사건 시설에 대한 사기행각을 벌여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소갑 제14호증 2018고단967 판결문).

그럼에도 김대진은 채무자 회사 이사회를 장악할 의도를 저버리지 않고, 여외식, 김현정을 통하여 2020. 10. 26.자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자신의 측근인 성미란, 구범모, 김홍근을 사내이사로 확보하고, 2020. 12. 5.자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는 자신이 사내이사로 선임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처럼 김대진측 경영진은 채무자 회사의 이익을 저해하는 범죄행위를 저질러왔고, 주주가 아님에도 자신의 가족과 측근을 통하여 채무자 회사 이사회를 장악하였습니다. 채권자는 과반주주로서 회사재산 처분행위를 저지하고 회사



경영을 정상화시키고자 하나, 이 사건 결의로 위법하게 변경된 정관 조항에 의하여 경영참여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5. 결론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채권자는 주주로서 이 사건 회사의 정당한 이익을 보전하기 위하여 신청취지와 같은 결정을 구하고자 본 신청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신청을 인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보실 경우에는, 그 담보제공에 관하여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로써 제출하는 방법에 의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 | | |
|------------|-----------|
| 1. 소갑 제1호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 2. 소갑 제2호증 | 주주명부 |
| 3. 소갑 제3호증 | 주식양도담보계약서 |
| 4. 소갑 제4호증 | 채권양수도 계약서 |

사 건 2021카합100685 주주총회결의효력정지등 가처분
채 권 자 김용석
채 무 자 동남해상관광호텔 주식회사

준 비 서 면

2022. 2. .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서평
담당변호사 김상호, 신원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3민사부 귀중

연락처 (02) 6204-5599 (변호사 김 상 호) shok78@naver.com
(02) 6204-5599 (변호사 신 원 진) swj3208@naver.com

준 비 서 면

사 건 2021카합100685 주주총회결의효력정지등 가처분
채 권 자 김용석
채 무 자 동남해상관광호텔 주식회사

위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 김용석의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1. 채권자는 채무자회사의 적법한 주주입니다.

가. 채권자는 주식 10만주를 취득한 후 대표이사로서 적법한 명의개서를 마쳤습니다.

채권자는 2014. 1.경 채권자의 자금조달능력을 신뢰한 김대진측의 권유에 의하여 대표이사에 취임하게 된 것이고, 이후 대표이사로서의 실질적 권한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입니다. 채권자는 하이자산대부 주식회사로부터 주식 10만주를 양수하던 시기에 채권자는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대표이사가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마당에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가 명의개서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채권자 스스로 명의개서를 마쳤기 때문에 채무자회사에 더 이상 명의개서를 요구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김대진 측은 채권자의 대표이사 사임 이후 주식 취득시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다는 등의 사유를 들며 채권자의 주주 지위를 부정하고, 채권자에 대한 통지도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등 전횡을 일삼았습니다.

나. 주주로서의 지위에 관하여는 이미 법원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채권자는 주주의 자격에 터잡아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채무자는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법원에 임시총회소집허가신청을 하였고, 그 결과 인용결정을 받았습니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비합1012). 위 사건에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주주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투었으나, 그 주장들은 모두 배척되었습니다.

다. 채무자가 제출한 주주명부는 확정판결에 반하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주주명부를 증거로 제출하면서 회사의 주주명부에 채권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합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제출한 주주명부는 그 내용이 확정판결에 반하고 관공서에 신고된 적도 없는 것으로서, 김대진측에서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채무자가 제출한 2012. 7. 주주명부(소을 제3-6증) 상 주주인 김대진, 정석길, 여외식, 김현정은 토마토2상호저축은행을 상대로 구주 45,000주에 대한 주식소유권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08가합15332). 위 소송에서 양도담보권자로 주권을 점유하고 있는 토마토2상호저축은행이 주식의 소유자라는 이유로 원고패소판결이 선고되었고, 항소, 상고가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소갑 제9호증 판결문, 소갑 제10호증 사건검색출력). 위 판결에 따르면 김대진, 정석길은 위 45,000주의 소유자라고 할 수 없음에도 주주명부에는 여전히 김대진, 정석길이 주주인 것처럼 기재되어 있습니다.

라. 예비적으로, 이 준비서면의 송달로 명의개서를 청구합니다.

백보를 양보하여, 만일 채권자가 명의개서를 청구하지 아니하여 주주명부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준비서면의 송달로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하는 바입니다. 채무자는 명의개서 청구를 거절할 것으로 보이는바, 회사가 부당하게 명의개서 청구를 거절하는 경우 (주주지위확인 등에 관한 별도의 판단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주식 양수인은 회사에 대하여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첨부 1.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9다89665판결 해설 참조), 채권자는 이에 터잡아 이 사건 신청을 합니다.

2. 기타 채무자 주장에 대하여

가. 채권자가 대표이사에 재직하게 된 경위

채권자는 2014. 1.경 채권자의 자금조달능력을 신뢰한 김대진측의 권유에 의하여 대표이사에 취임하게 된 것이며, 이후 대표이사로서의 실질적 권한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내부 사정이 복잡하고, 김대진측의 악의적 공격에 지쳐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것일 뿐입니다. 채권자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채무자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이지만, 주장의 진위 여부를 떠나 이 사건과 무관한 것입니다.

나. 이 사건 정관은 과반 주주의 경영참여를 봉쇄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로 변경된 정관의 내용은 보통결의와 특별결의를 구분하지 않고 무조건 발행주식 60% 이상의 의결정족수를 규정하고 있는바, 정관으로 가중할 수 있는 의결정족수의 한계를 초과한 것으로 위법한 것입니다. 채권자는 과반주주로서 회사재산 처분행위를 저지하고 회사 경영을 정상화시키고자 하나, 이 사건 정관 조항에 의하여 경영참여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 사건 정관을 결의한 주주총회가 부존재하는 것이기도 하려니와, 무엇보다도 이 사건 정관은 그 내용 자체로 과반주주의 경영참여를 봉쇄하고, 소수주주의 전횡을 보장하는데 이용되고 있어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신청을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관련 판례 해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9다89665판결)

2022. 2. .

채권자 김용석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서평**

담당변호사 김 상 호

담당변호사 신 원 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3민사부 귀중



채 동 현 변호사
법무법인 회우

기명주식의 양도와 양도인의 회사에 대한 명의개서 청구

이 자료는 채동현 변호사가 사건 판단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판례와 자료들을 중심으로 정리하여 연재하는 것이다. <편집자註>

명의개서청구권은 기명주식을 취득한 자가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이 가하여 그 기명주식에 관한 자신의 성명, 주소 등을 주주 명부에 기재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로써 기명주식을 취득한 지만이 그 기명주식에 관한 명의개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또한 기명주식의 취득자도 원자적으로 취득한 기명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를 한 것인지 아닌지 명의를 달리 하여 타인에게 처분한 것인지 등에 관하여 자유로이 결정한 권리가 있으므로, 주식 양도인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하여 주식 양수인 명의의 명의개서를 하여 달라고 청구할 권리가 없으며, 이러한 별다른 주권이 발행되어 주권의 인구에 의하여 기명주식이 양도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회사 성립 후 6월이 경과하도록 주권이 발행되지 아니하여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기명주식이 양도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주식양도인이 회사의 성립 후 6월이 경과하도록 주권이 발행되지 아니한 기명주식을 양도한 후 회사에게 1 양도사실을 확정일지 또는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면서 양수인 명의의 명의개서를 청구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명의개서청구권이 없는 주식 양도인의 명의개서청구에 불과하므로, 회사가 그 명의개서를 거절한 것을 가리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1. 대상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9다89665 판결
주주총회취소
원고(상고인) 오○○, 피고(피상고인) H 주식회사

하여 주○○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회사 설립 당시 주○○에게 운영자금을 투자한 투자자이다.

2. 사실관계

가. 피고회사는 2006. 12. 21. 부천시 원미구 중동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

나. 주○○은 2006. 12. 5.경 원고로부터 3억 원의 운영자금을 지원받기로 하면서 원고에게 위 3억 원 중 1억 5,000만 원은 주○○이 원고로부터 차용하여 투자하는 것으로 하되 차용원금은 2007. 11. 30.까지 상환하고, 사업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 중 80%는 주○○이, 20%는 원고가 각 수령하되, 주○○은 위와 같이 수령한 수익금 중에서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등 체세공과금을 지



급하겠다는 내용의 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한편, 피고회사 설립 시 발행된 주식 60,000주 중 원고가 12,000주, 원고의 지 조○○가 11,400주, 오○○이 9,600주, 송○○가 10,800주, 최○○, 최○○2가 각 7,200주, 탁○○가 1,800주 등을 인수하였다.

라. 그런데 탁○○가 2007. 1. 4. 최○○에게 자신의 주식 1,800주를 양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회사 주주명부 상 이에 따른 명의개서가 완료되었다.

마. 2007. 7. 4. 조○○가 전○○에게 자신이 소유한 주식 11,400주 전부를, 최○○2가 전○○에게 자신이 소유한 주식 7,200주 중 3,600주를 각 양도(이하 '2007. 7. 4. 자 주식양도'라 한다)하였고, 그 무렵 위 주식양도에 따라 피고회사 주주명부 상 명의개서가 완료되었다.

미. 2007. 12.경 최○○2는 원고에게 피고 주식 7,200주를, 조○○는 전○○2, 김○○에게 피고 주식 각 3,000주를, 오○○2에게 피고 주식 5,400주를 각 양도하였다. 조○○와 최○○2는 2008. 2. 18.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위 주식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반면에 조○○와 최○○2는 전○○에 대한 2007. 7. 4. 자 주식양도에 대하여는 피고에게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를 하지 않았다. 피고도 위 2007. 7. 4. 자 주식양도에 따른 주주명부상 명의개서를 하면서 확정일자 있는 승낙을 한 바 없다. 피고는 현재까지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다.

사. 피고회사 이사회는 2008. 2. 27. 이사인 원고, 최○○2와 감사 조○○를 해임하고 새로운 이사, 감사를 선임하기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기로 결의하였고, 피고회사 대표이사는 2008. 2. 29. 피고회사 주주명부 상 주주들에게 2008. 3. 14.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다는 사실을 통지하였다.

이. 피고회사는 2008. 3. 14. 본심 회의실에서 최○○2를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이 참석하여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라 한다)에서 이사인 원고, 최○○2와 감사 조○○를 해임하고, 이사 주○○과 감사 전○○을 선임하는 인건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찬성 주주의 의견권 56,400주 중 찬성 44,400주, 반대 12,000주로 위 인건을 승인하는 것으로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하였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결의는 그 결의방법에 허자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2007. 7. 4. 조○○는 자신이 보유한 피고 주식 11,400주 전부를, 최○○2는 자신이 보유한 피고 주식 7,200주 중 3,600주를 전○○에게 각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기에 따라 주주명부상 명의개서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위 주식양도에 대하여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나 승낙이 없었다. 이에 반하여 조○○와 최○○2가 2007. 12.경 원고, 전○○2, 김○○ 및 오○○2(이하 '원고 등')에게 자신들이 보유한 피고 주식을 전부 양도한 다음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이를 통지하였다.

나.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에 의한 2007. 12.경의 주식양도는, 확정일자부 통지가 없는 2007. 7. 4. 자 주식양도보다 우선한다. 피고는 원고 등의 요구에 따라 주주명부상 명의개서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부당하게 기피함으로써 원고 등이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 출석하여 의견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결의는 주주 아닌 자가 의견권을 행사하였고, 원고 등이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 출석하여 반대 의견권을 행사하였다면 원고 측 지분율이 51%이므로 이 사건 결의에 대한 찬성률은 49%밖에 되지 않아 의결 정족수에 미달하였을 것이다.

4. 1, 2심 법원의 판단

가. 1심 법원의 판단¹⁾

(1) 2007. 12.경 최○○2가 원고에게 피고회사 주식 7,200주, 조○○가 선○○2, 김○○에게 받은 주식 각 3,000주를, 조○○가 오○○2에게 받은 주식 5,400주를 각 양도(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라 한다)하고 2008. 2. 18. 피고회사에게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이 사건 주식매매사실을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런데 기명주식이 양도되었다 하더라도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권 양수인 명의로 개서하지 않는 한 양수인은 주식회사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주주로서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이것은 양도통지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인바(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69927 판결,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다25735 판결 등 참조), 원고 등이 피고회사에게 이 사건 주식매매로 인한 명의개서를 청구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집에 관하여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2심 법원의 판단²⁾

(1) 주주명부상 명의개서되지 않은 기명주식 양수인의 지위

상법 제337조 제1항은 "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주식 양수인이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려면 주주명부상 명의개서가 필요하다. 주주는 언제든지 회사와 관계없이 재산권 행사를 위해 자

유롭게 주식을 양도할 수 있고, 이러한 주식의 양도는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해지므로 이익배당 대상이 되거나 주주를 통한 회사의 집합적 의사를 결정하기 위한 선례로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를 확인적으로 확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2007. 12.경 기명주식을 양수한 원고 등으로서는 주식 양수사실을 증명하여 피고에게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명의개서 전에는 피고가 원고 등을 주주로 인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등은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실질 주주임에도 이권권 행사가 배제되었다는 점을 가지고 피고에게 대항할 수도 없다.

한편, 피고가 원고 등의 명의개서 청구를 부당히 거절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건대, 조○○와 최○○2는 2008. 2. 18. 피고에게 자신들의 원고 등에 대한 주식 양도 사실을 통지하면서 양도 주식에 관한 주주명부상 주주명의를 주식 양수인들 명의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주식 양수인은 양수한 주식을 제3자에게 다시 양도할 수 있어 명의개서 청구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고, 주식 양수인이 명의개서를 청구하려면 주식 양수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주식 양도인이 회사에 양도통지를 하는 기회에 주식 양수인에게 명의개서를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주식 양수인의 명의개서 청구로 볼 수 없다. 또한 주식 양수인인 원고 등이 피고에게 명의개서를 청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 등의 명의개서 청구를 부당하게 거절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2) 주식의 이중양도에 따른 주식 양수인들 사이의 우열

주권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도가 문제되는 경우 이중 양수인들 사이의 우열은 이중 양수인 중 원배에 대하여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9. 2. 13. 선고 2008가합2790 판결
 2) 서울고등법원 2009. 10. 14. 선고 2009나27270 판결



이미 명의개서가 되었는지에 상관없이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회사에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송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45537 판결). 다만,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나 송나을 먼저 갖춘 주식 양수인이 실질 주주로/결정될지라도 앞서 본 주주명부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그 주식 양수인이 회사에 대하여 의결권 등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주주명부상 명의개서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 등이 2007. 12.경 조○○·최○○2로부터 그들이 보유한 피고 주식 전부를 양수한 다음 조○○·최○○2가 피고에게 자신들의 전○○에 대한 2007. 7. 4. 가 주식양도보다 먼저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를 하였을지라도 원고 등은 전○○와 사이에서 자신들의 주식 양수가 우선함을 주장하여 피고에게 명의개서를 청구하는 것은 법론으로 하더라도 명의개서 전에는 피고에 대하여 자신들이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고 대항할 수 없다.

(3) 주주명부상 주주가 참이한 이 사건 결의의 하자 유부

따라서, 피고가 주주명부상 주주에게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개최 사실을 통지하고, 주주명부상 주주들이 위 주주총회에 참가, 의결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결의를 하였다면 그 결의방법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임바, 제1심 판결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5. 대법원의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조○○, 최○○2(이하 '조○○ 등'이라고 한다)가 이 사건 기명주식의 형식주주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원고, 전○○2, 김○○, 오○○2(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가 이 사건 기명주식의 실질주주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실명 조○○ 등

이 형식주주에 불과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조○○ 등이 2008. 2. 18.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기명주식에 관하여 한 명의개서청구를 원고 등이 한 명의개서청구라고 볼 수는 없다.

원심이 원고 등이 조○○ 등으로부터 이 사건 기명주식을 양수한 후 피고 회사에게 명의개서를 청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명의개서청구인이 누구인지에 관한 판단을 그르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명의개서청구권은 기명주식을 취득한 자가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에 기하여 그 기명주식에 관한 자신의 성명, 주소 등을 주주명부에게 기재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로서 기명주식을 취득한 자만이 그 기명주식에 관한 명의개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기명주식의 취득자는 원칙적으로 취득한 기명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를 할 것인지 아니면 명의개서 없이 이를 타인에게 처분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 자유로이 결정할 권리가 있으므로, 주식 양도인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하여 주식 양수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여 달라고 청구할 권리가 없다. 이러한 법리는 주권이 발행되어 주권의 인도에 의하여 기명주식이 양도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회사 성립 후 6월이 경과하도록 주권이 발행되지 아니하여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기명주식이 양도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조○○ 등이 2007. 12.경 피고 회사의 성립 후 6월이 경과하도록 주권이 발행되지 아니한 이 사건 기명주식을 원고 등에게 양도한 후 2008. 2. 18. 피고 회사에게 그 양도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면서 원고 등 명의의 명의개서를 청구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명의개서청구권이 없는 주식 양도인의 명의개서청구에 불과하므로 피고 회사가 그 명의개서를 거절한 것을 기리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주식 양도에 있어서 명의개서청구권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판이 대법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해 설]

1. 주식 명의개서 청구 일반

가. 주식 명의개서 청구소송의 경우를 보면, 당사자로서 원고는 주주명부상에 기재되지 않은 적격의 기명주주, 피고는 해당주주의 회사가 된다.

나. 주식발행 전에 주식을 양수한 실질주주는 단독으로 회사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3) 주식양수의 경우에 있어서 양도인, 명의신탁해지의 경우에 있어서 수탁자 등을 상대로 명의개서를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 4)

다. 주식양도인이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는, 주식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는 주권을 소지하고 있는 주식양수인이라 할 것이고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받을 우려를 이유로 주식양도인이 명의개서집치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하여 각하한 하급심판결이 있다. 5)

라. 주식의 소유자가 양도절차를 거부하는 경우에 있어 그 발행주식회사도 명의개서를 거부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장래이행의 소로서 회사에 대하여 장래의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6)

바. 명의개서의 청구방법은, 주식명의개서 청구자(주원)에게 신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하여야 하고, 주권 제시에 의한 자격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실질적인 권리의 존재를 다른 방법에 의하여 증명하여야 하며, 이로써 족하다. 명의개서청구에 소정의 서류제출을 요한다고 하는 정관의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주식의 취득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임을 회사로 하여금 진명하게 알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정한 것에 불과하여 주식을 취득한 자기 그 취득사실을 증명할 이상 회사는 위와 같은 서류가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명의개서를 거부할 수 없다. 7)

2. 이 사건의 경우

① 이 사건은 주주명부상 주주가 아닌 사람이 회사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하는 사건이 아니고, 주주명부상 주주가 아닐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회사에 대하여 실질 주주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회사가 자신을 배제하고 진행한 주주총회에 대하여 그 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의 법원 판단이다.

나. 대법원의 판단에서 명확한 바와 같이, 명의개서청구권은 기명주식을 취득한 자가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에 기하여 그 기명주식에 관한 자신의 성명, 주소 등을 주주명부에게 기재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로서 기명주식을 취득한 자만이 그 기명주식에 관한 명의개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기명주식의 취득자는 원칙적으로 취득한 기명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를 할 것인지 아니면 명의개서 없이 이

3)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0993,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36421 판결
 4)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6386 판결
 5) 부산고등법원 1998 1 23 선고 97나10116 판결
 6) 대법원 1972 2 22 선고 71다2319 판결
 7)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47728 판결



를 타인에게 처분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 고유요이 결정할 권리가 있으므로, 주식 양도인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하여 주식 양수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여 달라고 청구할 권리가 없는 것이며, 이러한 법리는 주권이 발행되어 주권의 인도에 의하여 기명주식이 양도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회사 성립 후 6월이 경과하도록 주권이 발행되지 아니하여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기명주식이 양도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이다.

다. 법원의 판단은 주식의 양수인 자체가 회사에 명의개서 청구한 사실 자체가 없으므로 그 주식의 취득자에게 주주명부에 기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주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여지는 없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러한 법원의 판단을 전제로 한다면, 주식의 양수인이 회사에 대하여 정당하게 명의개서를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를 부당하게 기전하였다고 한다면, 이 경우 해당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실무적으로는 보통 해당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임시로 주주의 지위를 정하는 가치분 신청을 하여 이를 수용하는 법원의 결정을 받은 다음 회사에 대하여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등 권리행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 사건 법원의 판단과 같이 회사의 부당한 명의개서 기결이 수반된 경우, 이러한 보전조치 없이 주주총회에서의 결의를 문제삼아 실질 주주가 권리행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능하다고 해석하여야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시 사 경 제 용 어

IMF 쿼터(Quota)

IMF 쿼터는 개방국이 공동으로 출자해 관리는 기금의 조성은 위해 국가가 개방국의 경제력이나 산업이나 기타 상환 능력(Quota)에 따라 개방국의 쿼터는 IMF에서 목표액 산출의 기준이 되지만 아니라 IMF의 각종 기금에 이용되는 한도의 선상도나 특별인출 권(SDR) 신청시 때에 구무별 결정이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이 때에 IMF 쿼터는 IMF에서 그 나라의 지위의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할 수 있으며 동시에 세계 경제에서의 영향력을 나타내기도 할 수 있습니다.

국가별 쿼터는 국민소득, 인원을 주, 지식, 기술수준의 비중 정도 등 개방국의 경제력인 나타내는 각종 지표들 비형으로 산출됩니다. 한편 IMF와 같은 국제기구들은 일반 인종과 문화에 따라 개방국에 자국의 모체수지가 약화되었을 때 IMF의 결정을 받아야 할 인종과 언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선일보에 게재된 내용임)

사 건 2021카합100685 주주총회결의효력정지등 가처분
채 권 자 김용석
채 무 자 동남해상관광호텔 주식회사

준 비 서 면

2022. 2. .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서평
담당변호사 김상호, 신원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3민사부 귀중

연락처 (02) 6204-5599 (변호사 김 상 호) shok78@naver.com
(02) 6204-5599 (변호사 신 원 진) swj3208@naver.com

준비서면

사 건 2021카합100685 주주총회결의효력정지등 가처분
채 권 자 김용석
채 무 자 동남해상관광호텔 주식회사

위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 김용석의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1. 채무자 주장에 관하여

가. 이사회 승인 및 명의개서에 관하여

채무자 회사는 주주의 주식양도시 주주는 이사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주식의 양도제한' 정관 규정 근거로 주식 취득 당시 이사회 승인이나 명의개서 요구가 없었던 채권자는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토마토2상호저축은행은 1998. 11. 채무자 회사 주식 100,000주에 관한 주식양도담보계약 및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하이자산대부 주식회사는 2011. 6. 28. 위 담보부채권 및 주식을 양수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 3. 21. 채권자에게 위 채권 및 주식 100,000주를 양도한 것입니다. 즉, 하이자산대부 주식회사와 채권자 사이의 채권 및 주식 양수도 계약은 담보권 실행의 측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까지 정관의 주식양도제한 규정이 적용되어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설사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보더라도, 당시 양도담보권자로서 채무자 회사의 주주였던(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8719판결 등 참조) 하이자산대부 주식회사가 2016. 3. 22. 채권양도 사실을 채무자 회사에 통지하였는바(소갑 제5호증 채권양도통지서), 채무자 회사는 위 통지를 받은 날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거부의 통지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상법 제335조의2 제3항에 의하여 주식의 양도에 관한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할 것입니다.

상법 제335조의2(양도승인의 청구)①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는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양도의 상대방 및 양도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양도의 승인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청구가 있는 날부터 1월이내에 주주에게 그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제2항의 기간내에 주주에게 거부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또한 채권자가 양수한 주식에 대하여 적법한 명의개서를 마친 사실은 앞서 주장한 바와 같습니다. 채권자의 주식 취득 채권자는 하이자산대부 주식회사로부터 주식 10만주를

양수하던 시기(2016. 3. 21.경)에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었고, 이후 2016. 11. 28.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채권자는 대표이사로서 실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주식을 양수한 것이므로 이를 회사에 숨기거나 명의개서신청을 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고, 더욱이 대표이사의 주식 취득은 경영권방어와 무관한 것이므로 이사회에서 이를 승인거절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나. 소을 제10호증 판결문에 관하여

채무자 회사는 2018년 판결(소을10-2, 2017가합104636)을 들어 채권자가 채무자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위 판결은 당시 채권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관계로 관련 증거를 제출하는 등 소송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결과일 뿐입니다.

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 회사로부터 유효하게 양수하였고 그에 따른 명의개서도 마친 점, ④ 피고는 참가인 김용석이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피고 주식 100,000주를 양수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주식양수도계약의 체결일, 매매대금, 약정사항 등을 알 수 있는 처분문서가 제출된 바 없고 주식매매대금의 지급 여부, 주권의 교부 등을 알 수 있는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 김용석은 이 사건 결의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결의는 주주가 아닌 사람에게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그 존재를 인정할 수 없는 점

<소을10-2, 2017가합104636 판결문 일부>

위 인정사실과 달리, 이 사건 가처분신청에 이르러 채권자는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채무자 회사 주식 100,000주를 양수받았다는 채권양수도 계약서와 채권양도통지서를 제출하였습니다(소갑 제4호증 채권양수도 계약서, 소갑 제5호증 채권양도통지서). 즉, 채권자는 2016. 3. 21. 계약서에 명시된 주식매매대금 7,000만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위 주식에 대한 주권을 교부받았고, 양도인인 하이대부자산관리 유한회사는 다음날인 2016. 3. 22. 채권양도 사실을 채무자 회사에 통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사의 적법한 주주라고 할 것입니다.

2. 결론

위와 같이 채무자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신청을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2. .

채권자 김용석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서평

담당변호사 김 상 호

담당변호사 신 원 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3민사부 귀중

개인정보유출주의 제출자:채권자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서평, 송달물 등재일시:2022.02.18 16:22, 출력자:정상수, 다운로드일시:2022.02.18 16:22
부산지법동부지원 2021카합100685 주주총회결의효력정지등 가치분 2022.02.18 제출 원본과 상위 없음

사 건 2021카합100685 주주총회결의효력정지등 가치분
채 권 자 김용석
채 무 자 동남해상관광호텔 주식회사

참고자료 제출

2022. 2. .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서평

담당변호사 김상호, 신원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3민사부 귀중

연락처 (02) 6204-5599 (변호사 김 상 호) shok78@naver.com
(02) 6204-5599 (변호사 신 원 진) swj3208@naver.com

참고자료 제출

사 건 2021카합100685 주주총회결의효력정지등 가처분
채 권 자 김용석
채 무 자 동남해상관광호텔 주식회사

위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 김용석의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참고자료를 제출합니다.

다 음

채권자가 주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주권의 사진을 참고자료로 제출합니다(위 참고자료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비합1012 사건에 제출된 것과 동일합니다).

참고자료

1. 주권사진 4장

개인정보유출주의 채권자:채권자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서평, 송달일:2022.02.18 16:22, 출력사:경상수, 다운로드일시:2
부산지법동부지원 2021가합100685 주주총회결의효력정지등 가치분 2022.02.18 제출 원본과 상위 없음

2022. 2. .

채권자 김용석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서평**

담당변호사 김 상 호

담당변호사 신 원 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3민사부 귀중

대한민국공화국의 국장은 대한민국 국장
부산지법등부지원 2021카합10068

등 가치분 2022.02.18 재



개인정보유출주의 제출자:채권자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서원, 송달을 통재일시:2022.02.18 16:22, 출력자:정상수, 다운로드일시:2022.02.20 22:51
 부산지법동부지원 2021카합100685 주주총회결의 효력 정지등 가처분 (2022.02.18 제출 원고) 상위 없음



東南海上觀光立型株式會社株券
 壹百株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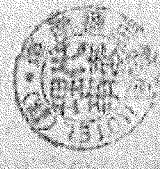
金壹百萬圓整

株主 高 貴下
 1. 會社의 成立 年 月 日 號 東南海上觀光立型株式會社
 1. 會社가 發行할 株式의 總數 西紀壹九七八年五月貳拾參日 株券壹萬
 1. 本 株式의 總數 壹拾萬圓 壹拾萬圓 壹拾萬圓
 1. 本 株式의 種類 壹拾萬圓 壹拾萬圓 壹拾萬圓
 1. 本 株式의 種類 壹拾萬圓 壹拾萬圓 壹拾萬圓

本株券은 當會社의 定款에 依한 株式壹百株의 株主임을 證하의 爲하야 記名者에게 此株券을 交付할
 西紀壹九八八年拾壹月貳拾參日

東南海上觀光立型株式會社

代表理事 裴成日



준 비 서 면

사 건 2021카합100685 주주총회결의효력정지등가처분
채권자 김 용 석
채무자 동남해상공관호텔 주식회사

위 사건에 관하여 채무자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채무자 회사는 1997. 5. 23. 해상공관호텔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채권자는 채무자 회사가 1998. 4.경부터 1999. 12.경 사이에 소외 주식회사 토마토상호저축은행(그 상호가 (주)파라다이스상호신용금고에서 2002. 3. 1. 주식회사 파라다이스상호저축은행으로, 2008. 2. 1. 주식회사 주식회사양풍상호저축으로, 2009. 3. 5. 현재의 상호로 재변경되었습니다 이후 ‘소외 회사’ 라고 표시합니다)부터 대출 받은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

해 제공된 양도담보(근질권설정)주식 100,000주(채무자 회사 배성일 소유 주식 45,000주, 서의숙 소유 주식 27,000주, 서원학 소유 주식 28,000주)를 담보권실행방법으로 2011. 6. 28. 하이대부자산관리유한회사(이후 ‘소외 회사’ 라고만 합니다)에 양도되고, 그 후 채권자가 2016. 3. 21. 위 소외 회사로부터 재양수 받은 양도담보권자이며, 채권자 김용석은 2014. 1. 27. 채무자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등기를 마쳤다가, 2016. 11. 28.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사람입니다.

나. 채무자 회사의 주주 및 주식보유현황

- (1) 1998. 11. 기준으로, 피고 회사의 총발행주식 100,000주 중 소외 배성일은 45,000주를, 소외 서의숙은 27,000주를, 소외 서원학은 28,000주를, 보유하고 있었고 (소을 제1호증의 1 주주명부 참조)
- (2) 2001. 4.경 채무자 회사에 과도한 외부자금유입(동산호환시설비, 선박개조 및 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고 신주발행 90,000주를 증자하게 되면서, 위 배성일에 90,000만주를 추가 배정하고 2002. 3. 29. 기준으로, 위 배성일 135,000주, 위 서의숙 28,000주, 위 서원학 27,000주로 주주명부를 정리하고, 2002년도 사업연도에 관한 채무자 회사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신고하게 되었습니다(소을 제2호증의 1 주주명부, 소을 제2호증의 2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각 참조).
- (3) 소외 여의식, 김현정은 2006. 1. 31. 채무자회사 주주 배성일로부터 주식

90,000주를 금 9,000,000원 매수한다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각 45,000주 분할매수하였고, 소외 김대진, 정석길은 2006. 2. 6. 위 배성일로부터 채무자 회사 주식 45,000주를 금 4,500,000원에 매매한다는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김대진 25,000주, 정석길 20,000주로 분할하여 매매함에 따라

2016. 3. 4. 기준으로, 피고회사 총발행주식 190,000주 중, 소외 정석길은 20,000주, 소외 김대진은 25,000주, 소외 여외식은 45,000주, 소외 김현정은 45,000주, 소외 서원학은 28,000주, 소외 서희숙은 27,000주 각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쳤습니다(소을 제3호증의 1 주주명부, 소을 제3호증의 2 2006년도 사업연도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소을 제3호증의 3,4 각 주식매매분할계약서 각 참조).

(4) 그 후 2006. 3. 4.경부터 2022. 1. 6.까지는 주주명부상 변동 없이 그대로 유지해오다가(2007. 7, 2018. 8. 10. 주주 김현정의 각 주소변경이 있어서 주소변경개서함)

2022. 1. 7. 기준으로 소외 정석길은 20,000주, 소외 김대진은 50,000주, 소외 여외식은 45,000주, 소외 김현정은 20,000주, 소외 서원학은 28,000주, 소외 서희숙은 27,000주로 주주명부상 명의개서를 하게 되었습니다.

(소을 제4호증 1 주주명부, 2 주식매매계약서 3 증권거래신고서 4 이사회회의록 각 참조)

다. 양도담보권자의 채권 및 근질권 실행 경위와 내용

(1) 채무자 회사는 1997.경 자본금 10억으로 설립한 회사로서, 설립 이후 채무자 회사 대표이사 배성일은 호텔용 선박개조 및 인테리어 공사와 호환 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위 소외 회사로부터 여신거래 약정에 따라 채무자 회사의 주주들인 배성일, 서의숙, 서원학이 연대보증한 아래 22억 7,400만원을 차용하면서, 1998. 11.경 당시 채무자 회사 주식 100,000주(배성일은 45,000주, 서의숙은 27,000주, 서원학은 27,000주)를 위 소외 회사에게 주식담보계약 및 근질권설정계약과 연대보증인 서의숙 소유인 부산 남구 남천동 45-37 부일전원빌라 제나동 101호 134.13㎡를 부동산담보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게 되었습니다.

(소을 제5호증의 1 주식양도담보계약서, 소을 제5호증의 2 부동산등기부등본 각 참조)

(2) 그 후 채무자 회사는 2002. 7. 20. 총공사비용 약 280억원 상당의 자본을 투입하여 국내 유일의 수상관광호텔을 오픈하여 영업을 하던 중 2003. 9. 13. 태풍 매미(스나미)로 인하여 사업목적물 선박이 좌초되어 더 이상 영업을 못하게 되므로써 수백억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3) 그러던 중 위 소외 회사는 2003. 7.경 연대보증인 서의숙의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위 소외 회사가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금 223,546,288원을 배당받아간 사실이 있으며

(소을 제5호증의 1 부동산등기부등본 소을 제5호증의 3 배당표 각 참조).

- (4) 2003. 3.경 소외회사는 채무자 회사 및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3가단36429 대여금 청구 소송을 하여, 2004. 7. 8. 확정판결을 받은 후 2006. 5.경 국제신문에 주식공매공고를 내고, 2006. 5. 18. 소외 이길우에게 채무자 회사 주주들이 담보로 제공된 양도담보주식 10만주를, 매매 금액 5억원으로 정하고 주식을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피고 회사 주주들이 수차례에 걸쳐 항의를 하였지만 들어주지 않았고 결국 위 이길우가 주식매매대금을 한푼도 지급치 않아 계약해지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소을 제6호증 판결문 사본, 소을 제7호증 1,2,3,4 각 내용증명 참조)

- (5) 소외 회사 1은 2009. 4. 21. 부산지방법원 2003가단36429호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확정판결에 기하여 채무자 회사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9타채112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제3채무자 주식회사 토마즈크루즈에게 8,715,813,492원 압류집행을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소을 제8호증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사본 참조).

라. 채무자 회사가 소외 (주)토마토그루즈에게 사업권 양도양수계약 체결 경위와 내용

- (1) 채무자 회사는 1997. 5. 23.경 해상관광호텔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하여 관할 관청인 해운대구청으로부터 부산 해운대구 우동 1443 지권사업부지

(일명 마린시티사업부지) 일대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사용허가를 받아 접안시설(잔교식 데크시설 길이 150미터, 너비 8,20미터), 방파제(길이 61미터, 너비 8미터), 고박시설(콘크리트 앵커) 등 부두시설 공작물을 설치하고 선박(러시아 중고선박)을 구입하여 호텔식으로 개조 후 2002. 7. 경 오픈하여 호텔업을 운영하다가 2003. 9.경 부산을 강타한 태풍 매미로 선박이 좌초되어 수백억원 재산상 피해를 입고 사실상 영업이 중단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2) 그러던 중 2005. 10.경부터 2006. 1.중순까지 서울 소재 수상관광호텔 시행전문업체인 (주)토마스홀딩스 중개로 채무자 회사의 사업권양수 문제로 여러 차례 협상하게 되었고, 그 때 채무자 회사 대표이사 배성일과 채권자 파라다이스 저축은행 대표 김진태 및 여러 임원진들과 함께 피고 회사 사업권 양도 및 회사 경영 활성화를 위해 회사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고 직접 경영에 참여해달라고 제안하였지만, 소외 회사는 과점 주주가 되면 직접 국세 및 지방세와 구청에 채납 채무만 약 100억원이 넘는 뜨거운 감자를 손에 쥌 수 없다면서 일언지하 거절하였습니다.

(3) 2006. 1. 26. 채무자 회사는 수상관광호텔 신규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 (주)토마스크루즈와 매매대금 50억원으로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을 하게 되었고, 그 후 소외 회사는 채권자로서 압류금액 8,715,813,492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고 채권확보권리행사만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소을 제9호증의 1 사업권양도양수계약서, 소을 제9호증의 2 이사회 회의록, 소을 제9호증의 3 주주총회의사록 참조)

2. 채권자의 주식취득에 관한 법인 정관 및 상법규정에 관하여

가. 채권자의 주식 취득

- (1) 채권자는 위 소의 회사가 2011. 6. 28. 담보권 실행으로 이 사건 채무자 회사 주주 배성일 외 2명에 대한 채권 및 주식 100,000주(주권포함)를 모두 하이대부자산관리 유한회사에 양도하게 되었고
- (2) 위 하이대부자산관리 유한회사는 위 채권 및 주식(주권포함)을 2016. 3. 21. 양수금관련 소송 대리인 대표이사였던 채권자에게 양도되고, 양도인 하이대부자산관리 유한회사는 2016. 3. 22. 그 사실을 채무자 회사에 통고 하였습니다.
- (3) 채권자는 채무자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주주라고 주장하면서 소갑 제3호 증 주식양도담보계약서 제7조 및 제10조에 기재된 내용을 기하여 마치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주주로서 회사에 의결권을 당연히 행사할 수 있는 실질 주주라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나. 채무자 회사의 정관

- (1) 채무자 회사는 특수목적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비상장 회사로서 우호적인 주주만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기 때문에 회사는 주주의 입장에서 회사 운영을 교란시키는 제3자의 참여를 최대한 배제하기 위하여 회사

정관 제10조 규정을 두어 “주주의 주식양도시 주주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그가 가진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 라고 양도제한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2) 이러한 양도제한 있는 이 사건 기명주식을 양도·양수 절차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한 자라고 하더라도, 주주권의 행사로 주주총회에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한다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주주명부상 적법하게 주주로 등재되어있는 자만 이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채권자는 이 사건 채무자 회사에 비치된 주주명부에 주주로 명의개서 된 바가 전혀 없었습니다.

(소을 제4호증 각 주주명부 참조)

다. 상법규정 위반

- (1) 양도담보권의 담보권을 실행하여 주식이 확정적으로 질권자에게 이전 될 경우, 주식취득자는 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 취득승인을 청구하여 취득을 승인하면 회사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으며, 승인이 거절되면 회사에 대하여 다른 매수인의 지정을 청구하여,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인데도, 이 사건 채권자는 채무자 회사에게 2016. 3. 21.부터 지금 현재까지 주식취득승인 청구를 전혀 한 사실이 없었을 뿐 아니라 주권을 제시하면서 명의개서를 요구한 사실이 전혀 없었습니다.

(2) 그런데 채권자는 소외 회사와 주주 배성일 외 2명이 1998. 11.경 소외 회사에게 금전거래대출하면서 작성된 주식양도담보계약서에 관리계약약관 내용 중 기재된 담보권자의 승인 없이는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못하며, 주권에 대한 권리행사를 일체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양도담보주식을 승계취득한 채권자도 당연히 회사에 대하여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

(3) 그런데 위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여신거래금전대출 및 주식양도담보계약 이후부터 이 사건 담보권실행할 때까지 채무자 회사 사업권이나 경영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주주권을 행사를 한 사실이 전혀 없었을 뿐 아니라 채무자 회사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 나타나 주주로서 의결권을 단 한번도 행사한 바도 없었습니다.

이는 채무자 회사의 주주로서 의결권 행사라기 보다는 형식적으로 그와 같은 규정을 둔 것이고 채권자로서 금전채권에 대한 가치를 하락시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감독권에 대한 상호 견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더구나 수십년간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열었지만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찬부의 의사표시 하거나, 중요한 안건에 대하여 주주로서 참여하여 의문을 제기한 사실이 전혀 없었는 것만 보더라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4) 따라서 채권자는, 주식양도담보권자의 권리를 양수한 양도담보권이면서 등록양도담보가 아닌 약식양도담보권자입니다, 이 경우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양도담보권자가 주주의 자격을 갖추려면 회사에 명의개서를 하

고 하며, 회사에서는 회사 정관 제10조에 따라 이사회를 열어 양도승인, 취득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때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된 주주만이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므로 채권자는 그러한 명의개서 요구나 이사회 승인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 자로서 채무자 회사에 대항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가 아니고 채권자에 불과하므로 그 양수받은 사실만 가지고는 회사의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의 부존재 확인을 구함에 있어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3. 채권자 김용석이 채무자 회사 대표이사 취임 및 사임 경위에 대하여

가. 위 김용석은 2014. 1. 초순경 피고 회사를 찾아와 자신이 교도소 수감 중 알게된 굿모닝시티 윤창렬창회장의 비자금을 가져와 호텔사업에 투자 시키겠다는 조건으로 주식 지분 없는 회사 대표로 등기해달라고 제의를 하여 채무자 회사 임원들은 그 말을 믿고 2014. 1. 27. 김용석을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된것입니다.

나. 위 김용석이 피고 회사를 대표하여 그 업무를 처리하면서 직무와 관련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불법행위를 하고, 피고 회사 호환시설을 이용하여 포장마차로 하게 해준다고 속이고, 피고 회사 모르게 일부 돈을 횡령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고, 또 회사 직위를 이용하여 개인비리를 수

없이 저질러온 행위가 적발되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다. 그 후 2016. 3. 22. 채무자 회사와 하이대부자산관리(유)와 서울지방법원 2014가합582828(서울고등법원 2015나 2067046) 양수금 사건 소송 중 채무자 대표이사직을 이용하여 주주 및 임원들에게 알리지 않고 이 사건 채무자 회사와 배성일 외 2명의 채권 및 주식을 금 7,000만원에 양수받은 후, 그 사실을 채무자 회사 주주 및 임원들에게 알리지 않고 취득한 것은 대표이사의 직무상 충실 및 선관의무를 위반하는 등 상법규정 및 회사 정관에 위반한 행위로서, 그러한 양수인의 자격이 채무자 회사에 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라.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위 김용석을 채무자 회사 대표이사의 직무행위를 배제하기 위해 이사회 결의 등으로 대표이사 김용석은 사임하게 된 것입니다.

4. 채권자가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주인지 여부에 대하여

가. 채권자는 채무자 회사 주주명부상 명의개서된 주주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소갑 제2호증’ 주주명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서 내용을 자세히 검토해보면 채무자 회사에서 보관·비치하고 있는 주주명부(소을 제1호증 내지 소을 제4호증 각 주주명부)와 비교해보면 그 양식

과 기재내용이 확연하게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기명주식 이전시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하는 주주명부입니다.

나. 더구나 채권자가 제출한 위 주주명부는 소송 등 재판에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주명부 성명 김용석, 주식수 100,000주, 작성일자 2016. 10. 20. ” 이라고 기재한 것을 보면 마치 채권자가 채무자 회사 대표이사로 근무할 때 적법하게 작성한 것인양 보이기 위하여 임의로 허위 기재 한 문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로 채권자가 2016. 11. 28. 대표이사 사임 후 채권자와 채무자 회사 간에 진행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가합105786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가합104636호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 진행 후 각 판결 이유에 채권자가 채무자 회사 주주명부상 주주가 아니라는 점과 위 소송의 확정판결 시점까지 ‘소갑 제2호증’의 주주명부가 없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소을 제10호증의 1, 2 판결문 각 참조)

또한 채권자가 채무자 회사 대표이사로 근무할 당시 ‘소갑 제2호증’ 주주명부를 작성했다면 회사에 비치되어 있는 주주명부를 볼 수 있었을 것이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소를 그대로 주주들 주소란에 모두 기재할 수 있는데, 이를 생략하고 주주명부에 이름만 작성한 것만 보더라도 2016. 10. 20. 당시 작성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5. 채권자의 피보전권리 주장에 대한 항변

가. 주주가 아닌 사람이 결의에 참여

- (1) 채권자는 이 사건 주주총회에 김대진(25,000주), 정석길(20,000주), 여외식(45,000주), 김현정(45,000주)가 참여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위 김대진, 정석길 소유한 주식은 소외 회사가 주주권을 가진 소유자인데, 적법한 주주가 아닌 김대진, 정석길이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에 참여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2) 상행위로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주식에 대한 질권이 설정되고 그 질권 실행에 따라 주식소유권을 이전 받았다고 하더라도, 양도제한이 있는 채무자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려면 반드시 회사의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 (3) 그리고 금전대출약정시 채권자가 주식의 질권을 가지면서 주식의 의결권도 포함된 포괄위임형식의 문구가 기재된 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채무자 회사의 관리·감독 측면에서 작성되는 것이고, 금융권인 은행에서 대외적으로 주식 소유권을 이전 받는 것까지는 원치 않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주식소유권을 행사하려면 명의개서 하여야 하며 또한 채무자 회사에서도 양도담보권자(질권자)에게 소집통지하지 않고, 회사에 비치된 주주명부상 주주들에게만 소집통지하여 주주총회결의가

이루어졌더라도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할 것입니다.

나. 과반 주주에게 소집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이 사건 주주총회가 개최될 당시 발행주식총수 19만주 중 소외 회사가 10만주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소외 회사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위 결의가 부존재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 앞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소외 회사는 채무자 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주가 아닙니다.

위 소외 회사는 양도담보권자로서 채권의 담보 목적으로 재산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할 경우, 당사자 사이에 정산 절차를 요하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 추정되고, 소외 회사는 상호저축법에 따른 금융기관으로 채권의 담보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양도담보 및 근질권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그 양도담보권자가 주주의 자격을 갖추려면 회사에 명의개서를 요구하며 회사에서는 회사 정관 제10조에 따라 이사회를 열어 승낙 여부를 결정하고, 그 때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하면,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소외 회사는 그러한 명의개서 요구나 이사회 승인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습니다.

(3) 그리하여 채무자 회사의 소집권자인 대표이사 정석길은 채무자 회사의 2007. 7. 12. 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들에게 소집통지 하게 되었고 주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양도담보권인 소외 회사에게는 주주가 아니므로 통고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다. 실제 주주총회가 개최되지 않고 의사록만 작성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채권자는 2007. 7. 12. 정관 변경에 관한 주주총회소집의 이사회 결의나 주주총회소집통지를 할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어 이 사건 주주총회를 적법한 소집결의나 소집통지가 존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주주총회가 개최되지 않았음에도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외관만 작출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 채무자 회사가 제출하는 증거서류에 의하며

① 2007. 7. 10. 의장 정석길의 소집통지에 따라 개최된 임시주주총회 및 같은 날 이사회에서 출석한 이사 전원(정석길, 김대회, 김대진, 감사 배성일)과 출석한 주주{정석길, 김대진, 김현정(대리인 김대회)} 전원 찬성으로 이사이창주, 이사 이상준, 대표이사 이길우, 감사 이부자를 각 해임하고 정석길, 김대회, 김대진을 이사로, 배성일을 감사로, 각 선임하기로 결의하였으며

② 2007. 7. 11. 소집권자인 정석길의 소집통보로 원시정관변경(제21조) 건으로, 2007. 7. 12. 임시주주총회로 결의하기로 하는 내용의 후속 결의 결정에 따라 2007. 7. 12. 소집권자인 정석길의 소집통고로 주주 6명 중 4명(참석주식수 합계 135,000주)이 출석하여, 참석주주 전원의 동의로 의결하고, 2007. 7. 15.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사 전원이 참석하여, 참석이사 전원

의 찬성으로 결의 되었습니다.

{소을 제11호증의 1 인증서(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소을 제11호증의 2 인증서(이사회 회의록), 3 (이사회 회의록), 4 (주주총회의사록 및 정관), 5 (이사회 회의록)}

- ③ 위와 같이 정당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된 절차와 실제의 회의절차에서 주식 72% 다수주주들이 참석하여, 참석주주 전원의 동의에 의하여 작성한 주주총회의사록을 공정증서까지 작성하고, 이사 전원이 참석하여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에 의하여 결의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설사 일부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 하였거나, 법정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전자 문서 또는 통화에 의하여 주주총회소집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주주총회소집절차상의 하자는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 사유가 아니라, 단순취소사유 또는 재량기각사유에 해당한다는 판시 내용을 참조한다며 위 주주총회가 현저하게 불공정하거나 중대한 하자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라. 주주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 내용이 법령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 (1) 채무자 회사가 2007. 7. 12. 법인 정관 21조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한다. 단 정관 변경의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와 발행주식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한다.” 를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의 6할 이상의 수로 한다. 단 정관 변경, 대표이사 변경의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이 6할 이상의 수로 한다.” 라고 변경한 것은 보통결의와 특별결의를 구분하지 않고 무조건 발행주식 60% 이상의 의결정족수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정관으로 가중할 수 있는 의결정족수의 한계를 초과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 상법 제368조 제1항 주주총회의 “보통결의” 요건에 관하여

“총회의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1/4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지만 “보통결의” 요건을 정관에서 달리 정할 수 있음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정관에 의하여 의사정족수를 규정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므로, 다소 가중하게 변경하더라도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하게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3) 그리고 상법 제434조 ‘특별결의’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지만 개정 전의 “특별결의요건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출석과 그 의결권의 2/3 이상” 이었다가 “발행주식총수의 1/3이상의 수” 로 개정된 것은 다수의 주주에게 폭 넓게 분산되어 있는 주식회사(상장회사)의 경우 종전 규정에 따른 특별요건을 갖추기 위한 의사정족수를 충족시키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정되었지만,

그렇지 아니한 비상장회사(폐쇄회사)에서는 현재 보편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발행주식 3분의 2 (66%) 보다 적은 발행주식 3/5(60%)으로 결정하였다고 하여 가중하여 초다수결의제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 (4) 이는 채무자 회사의 특성상 소수 주주 6명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과다주주와 소수주주간에 대립되는 이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거나, 균형을 이루기 위해, 주주 상호간의 합리적인 이해조정이 필요하고, 상호 합의 속에 경영의 안정성과 계속성, 효율성을 위해서 폐쇄회사에서 더더욱 필요한 것으로 초다수결의(출석주주의 의결권 90%, 발행주식 70% 이상의 찬성 결의)요건으로 변경한 것이 아닌 한 채권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입니다.

4. 보전의 필요성 항변

가. 이 사건 총회결의의 하자

- (1) 채무자 회사는 주주 아닌 사람이 결의에 참여하였고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 이상을 보유한 주주인 채권자에게 소집통지 하지 아니하였으며 실제 주주총회 개최 없이 의사록만 작성된 하자가 있을 뿐 아니라 그 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배되어 무효이거나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하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총회결의를 부존재 또는 무효라는 이유로 채무자 정관 21조 변경 부분의 효력은 정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2) 채권자는 양도담보(근질권)된 주식을 담보권 실행으로 기명주식을 취득한 주주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어야만 회사에 대항할 수 있고(상법 제337조 제1항)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며 회사에 대항하지 못합니다. 게다가 채무자 회사는 물론이고 채권자가 이 사건 소송 중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된 주주명부(소갑 제2호증)에 주주 성명만 있지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주주명부를 기초로 하여, 주주로서 의결권 등 회사에 대항하여 행사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가사 백번 양보하여 양도담보주식을 취득한 채권자로서 종전 채권자 권리를 대위하여 불측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고, 부당한 결과의 발생의 방지하기 위한 또는 현저한 손해가 있거나, 급박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 부득이 효력 정지 또는 집행을 정지해야 할 사항이 조속히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십수년전 주주총회결의 내용을 가지고 지금 현재 채무자 회사에 명의개서 하지 않은 주주가 이 사건 소송 또는 가처분을 제기하는 것은 권리남용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아 보전의 필요성이 부존재한 것입니다.

나. 위법한 정관 조항의 집행금지 필요성 항변

- (1) 채권자는 이 사건 결의로 위법하게 정관 조항에 의하여 과반 주주인 채

권자의 경영참여가 구조적으로 봉쇄되고, 소수주주의 전횡이 보장되었다는 이유로 정관 21조 조항의 집행을 금지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 위 주장에 대하여 채무자 회사가 종전에 항변한 내용을 그대로 원용하고자 합니다.

다. 김대진 측 경영진은 회사의 재산을 함부로 처분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채권자는 김대진이 채무자 회사 주주가 아니면서 주주로 참여하여 주주총회에 의결권을 행사하고, 회사재산을 자신에게 양도시킨 후 그 공작물을 양도하여 매매대금을 편취하는 등 사기행각을 저질러 왔고, 자신의 측근인 성미란, 구범모, 김홍근을 사내이사로 확보하고 회사 이사진을 장악한 후 채무자 회사의 이익을 저해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바, 채권자가 과점주주로서 회사재산처분행위를 저지하고 회사 경영을 정상화 시키고자 하나, 이 사건 결의로 위법하게 변경된 정관 조항에 의하여 경영참여가 불가능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

(2) 김대진은 1999.경 채무자 회사에 입사하여 총괄본부장라는 중책을 맡아 근무해오다가, 회사 대표이사 배성일의 지병(고혈압과 당뇨병)으로 2008.경부터 회사 전반에 관한 경영을 위임 받고, 지금 현재까지 약 십수년간 거의 폐업상태인 회사를 관리, 운영해오게 되었는데

(3) 그 당시 회사와 해운대 구청 간에 공유수면점사용허가 취소 및 항만, 점용 사용관계와 관광사업 인·허가 취소 등 각종 소송을 약 20여건 이상 진행하면서 소요된 소송비와 직원 급여 및 사무실 유지비를 약 15억 원 이상의 개인 돈을 투입하여 회사를 유지, 관리해왔고, 또 영업재개 및 경영활성화를 위해 십수년간 노력한 자입니다.

그런데 김용석은 2014. 1. 27.부터 2016. 11. 28.까지 약 3년간 대표직을 이용하여 업무상 횡령, 사기 등 각종 민·형사상 불법행위를 저질러 왔을 뿐 아니라 2016. 3. 22.경 채무자 회사와 하이대부자산관리(유)와 양수금 (서울고등법원 나2067046) 소송 도중 피고 회사 및 임원들 동의나 승낙 없이 회사 모르게 피고 회사의 채무 및 양도담보주식 전부를 금 7,000만 원에 양수받은 자입니다.

이는 대표이사로서 대표권을 남용하여 자기의 이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대표행위를 한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할 것입니다. 또한 채무자 회사에게 상법 제341조 “자기주식취득”의 권리를 침해하여, 채무자 회사의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것이고, 양도담보설정자인 주주 배성일에 대한 주식 취득 기회를 뺏어간 것입니다.

(4) 위와 같은 채무자 회사의 이익을 저해하는 범죄행위를 저지른 자가 채무자 회사의 재산을 보호하고, 경영을 정상화 시키기 위해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서 결정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소갑 제12호증의 1 형사판결문, 2 형사판결문, 3 녹취록(주권을 다른사람 소지함), 4 녹취록(주권을 다른사람 소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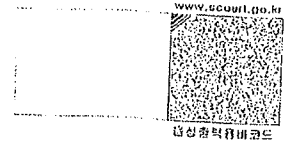
5. 결어

따라서 채권자의 이 사건 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증방법

1. 소을 제1호증의 1 주주명부	1통
2. 소을 제2호증의 1 주주명부	1통
3. 소을 제2호증의 2 2002년도 사업연도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1통
4. 소을 제3호증의 1 주주명부	1통
5. 소을 제3호증의 2 인증서주식매매계약서	1통
6. 소을 제3호증의 3 주식매매계약서	1통
7. 소을 제3호증의 4 이사회회의록	1통
8. 소을 제3호증의 5 2006년도 사업연도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1통
9. 소을 제3호증의 6 주주명부(2012.7.)	1통
10. 소을 제3호증의 7 주주명부(2017. 8.10.)	1통
11. 소을 제4호증의 1 주주명부(2022. 1. 7.)	1통
12. 소을 제4호증의 2 주식매매계약서	1통
13. 소을 제4호증의 3 증권거래세신고서	1통
14. 소을 제4호증의 4 이사회회의록	1통

15. 소을 제5호증의 1	주식양도담보계약서	1통
16. 소을 제5호증의 2	부동산등기부등본	1통
17. 소을 제5호증의 3	배당표	1통
18. 소을 제6호증	판결문 사본	1통
19. 소을 제7호증의 1,2,3,4	각 내용증명	1통
20. 소을 제8호증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사본	1통
21. 소을 제9호증의 1	사업권양도양수계약서	1통
22. 소을 제9호증의 2	이사회회의록	1통
23. 소을 제9호증의 3	주주총회의사록	1통
24. 소을 제10호증의 1	각 판결문	1통
25. 소을 제10호증의 2	〃	
26. 소을 제11호증의 1	임시주주총회의사록	1통
27. 소을 제11호증의 2	이사회회의록	1통
28. 소을 제11호증의 3	이사회회의록	1통
29. 소을 제11호증의 4	주주총회의사록	1통
30. 소을 제11호증의 5	정관	1통
31. 소을 제11호증의 6	이사회회의록	1통
32. 소을 제12호증의 1	형사판결문 사본	1통
33. 소을 제12호증의 2	형사판결문 사본	1통
34. 소을 제12호증의 3	녹취록(주권을 다른 사람 소지함)	1통
35. 소을 제12호증의 4	녹취록(주권을 다른 사람 소지함)	1통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1 8 단 독

결 정

사 건 2020카단1443 주권교부청구권가압류

채 권 자 김성태 (630101-1798216)
부산 기장군 기장읍 대변로 105 (대변리)

채 무 자 김용석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30길 37, 301호 (역삼동, 테이지빌)

제 3 채 무 자 동남해상관광호텔 주식회사 (180111-0232495)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3로 39, 204호 (우동 1436, 카이저빌)
대표이사 황용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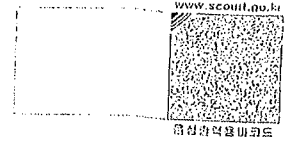
주 문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의 주권에 대한 주권교부청구권을 가압류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주권을 교부하거나 채무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채무자 이외의 자에게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채무자는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청구채권의 내용 대어금





청구금액 금 50,000,000 원

이 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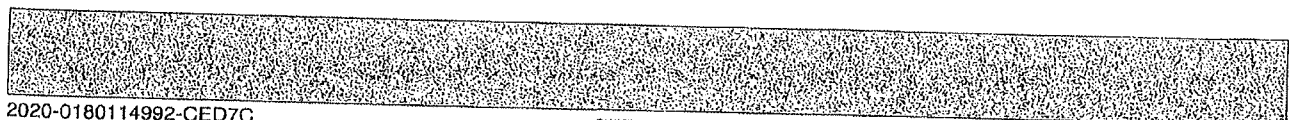
이 사건 주권교부청구권가압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로 공탁보증보험증권(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증권번호 제 100-000-202004906911호)을 제출받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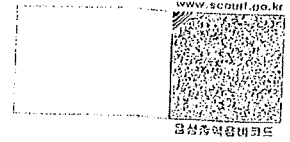
2020. 11. 16.

판 사 추경준



- ※ 1. 이 가압류 결정은 채권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기초로 판단한 것입니다.
- 2. 채무자는 이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가압류이의나 취소신청을 이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목 록]

[청구금액 : 금 50,000,000 원정]

가압류할 주식의 표시

채무자 김용석이가 제3채무자 동남해상관광호텔 주식회사로부터 교부 받아야 하는 주권교부 청구주식 중, 위 청구 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액.

=== 아 래 ===

[채무자 : 김 용 석 . 청구금액 : 금 50,000,000 원정]

[제3채무자 : 동남해상관광호텔 주식회사]

[보통주, 1주의금액 : 10,000원. 김용석 소유주식 : 100,000주.]

- 끝 -





정본입니다.

2020.11.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법원주사 김호중



※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번호조회 메뉴를 이용하거나, 담당 재판부에 대한 문의를 통하여 이 문서 하단에 표시된 발급번호를 조회하시면, 문서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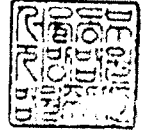
서울동부지방법원 결 정

사 건 2021타채4472 주식압류명령
채 권 자 김성태 (630101-1798216)
부산 기장군 기장읍 대변로 105 (대변리)

정본입니다.

2021.11.16

김원주사로 박순영



채 무 자 김용석 (610611-1046910)
서울 송파구 위례순환로 477, 2303동 1104호 (장지동,
위례포레샤인23단지)
제 3 채 무 자 동남해상관광호텔 주식회사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3로 39, 204호 (우동 1436, 카이저빌)
대표이사 황용준

주 문

1.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목록 기재 주식을 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위 주식에 대하여 채무자의 청구에 의하여 명의개서를 하거나 채무자에게 주권을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위 주식에 대하여 매매, 양도,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구금액

금 71,221,917원

이 유

채권자가 위 청구금액을 변제받기 위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가단10055 대어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10. 20.

사법보좌관

박가영



주의: 1. 이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송달받은 날부터 1주 내에 이 법원에

※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번호조회 메뉴를 이용하거나, 담당 재판부에 대한 문의를 통하여 이 문서 하단에 표시된 발급번호를 조회하시면, 문서의 위, 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법보좌관 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른 즉시항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법원조직법
제54조 3항,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민사집행법 제15조, 제227조, 제229조
참조).

2.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액을 공탁할 수 있고
이때에는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48조 참조).

별지목록 (압류할 채권의 표시)

청구금액 금 71,221,917원

원금 50,000,000원

이자 21,221,917원

합계금 71,221,917원

(이자계산 : 2019. 6. 14부터 2020. 11. 14까지 520일은 연 24%,
2020. 11. 15부터 2021. 9. 8까지 251일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
원)

채무자 김용석이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아래 주
식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액

아 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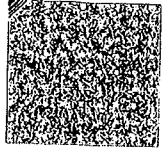
1. 주식발행회사 동남해상관광호텔 주식회사

1. 주식의 종류 보통주식

1. 1주의 금액 10,000원

1. 납입주식수 100,000주

(제3채무자의 발행주식 총수 190,000주 중 채무자의 지분 보
통주식 100,000주에 해당되는 주식임)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2021. 12. 29

사 건 2021고단1992 징역 : 6월 집행유예 2년
피 고 인 김용석(610611-1*****)

등록기준지 서울 마포구 토정동 이하 기재생략

검 사 박준웅

판 결 선 고 2021. 12.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김○태에게 ‘내가 동남해상관광호텔(주)의 대표이사인데,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호텔 신축을 위한 부지 정지작업을 하려고 한다, 구청 허가를 받는 데 필요한 경비 등으로 사용할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정지작업장에서 간이편의점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고, 3~4개월 안에 5,000만 원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동남해상관광호텔(주)의 대표이사가 아니었으며 피해자로 하여금 위 정지작업장에서 간이편의점 등을 운영하게 해 줄 어떠한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호텔 신축 관련 경비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당시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9. 1. 31. 피고인이 지정한 김○범 명의 신한은행 계좌(110-418-4****)로 5,000만 원을 이체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범정진술

1. 김○태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정보 조회),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서(동남해상관광호텔 황○준의 사실확인서 제출), 수사보고(동남해상호텔 대표이사 김○진 전화통화), 수사보고(편취 범의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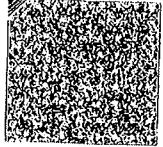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징역형 1회, 벌금형 1회 등 수차례 처벌받은 전





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판사 _____

